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4-14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Corruption Risk Assessment
Manual 2022



국민권익위원회

목 차 | CONTENTS

I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06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08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0
4. 부패영향평가 대상	11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4

II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18
2. 평가자료 작성요령	26

III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70
2. 평가 대상.....	70
3. 평가 제외 대상	71
4. 평가 방법.....	72

IV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82
2. 평가 대상.....	82
3. 평가 제외 대상	83
4. 평가 방법.....	84

V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96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04
(3) 특혜발생 가능성	112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21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30
(3) 재정누수 가능성	140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148
(2) 공개성	156
(3) 예측 가능성	163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172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82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193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01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14

참고자료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230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233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Corruption Risk Assessment Manual 2022



부패영향평가제도 총설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4. 부패영향평가 대상
5. 부패영향평가 기준



1.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 부패영향평가 의의

-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될 경우 이를 사전에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부패방지시스템

▶ 부패영향평가 목적

- 법령 내 불필요하게 사용된 불확정 개념, 공백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법제도에 있어서 부패발생에 취약한 분야의 본질적인 원인을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법령 입안·집행과정에서 과도한 재량을 적정화하고,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및 법령의 예측 가능성 제고

▶ 부패영향평가 필요성 및 추진근거

- 사안별 사후 적발 및 처벌에 중점을 두는 소극적 부패통제로는 부패발생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부패발생 방지에 한계가 있음
- 법령·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개선하는 부패 예방적 성격의 통제장치가 필요함
 - » 2005. 12. 29. 부패방지법 개정을 통하여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2006. 4. 1. 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2007. 12. 28.부터 부패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부패영향평가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검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
 -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 자료요청, 평가결과의 통보 등
 - 공직유관단체장의 부패영향평가 요청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6항
 -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계기관 협의 시 부패영향평가를 함께 요청



2.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및 주요 개정사항

1 부패영향평가 지침의 의의

▶ 의의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 성격의 운영기준

▶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필요성

- 부패영향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평가업무의 효율화 도모
- 부패영향평가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및 이행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2 부패영향평가 지침 주요 개정사항

▶ 개정이유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평가기준에 추가하여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주요 개정사항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

평가 분야	평가기준(11)		평가 분야	평가기준(12)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3. 부패영향평가 운영 및 관련기관

1 평가 및 운영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 ⇒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 ⇒ 기타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총괄
 - ⇒ 참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 제12조

2 자문기구 및 외부전문가

-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분야별로 실무경험이나 학식 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운영
 - ⇒ 법·제도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 평가결과에 대한 기관별 제출의견의 타당성 검토 등
 - ⇒ 참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지침」 제21조 및 제22조

3 평가운영 협조기관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 등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기관
 - ⇒ 소관 법령 등에 대한 개선·정비 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운영
 - ⇒ 법령(안)의 평가요청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작성·제출
 - ⇒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노력 등



4. 부패영향평가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등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실시

1 법령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 법령은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방식 및 절차를 차별화
 -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 제·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현행 법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실시

2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등)

-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 현행 행정규칙은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 행정규칙을 별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 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3 자치법규 (조례, 규칙)

-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4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 (정관, 사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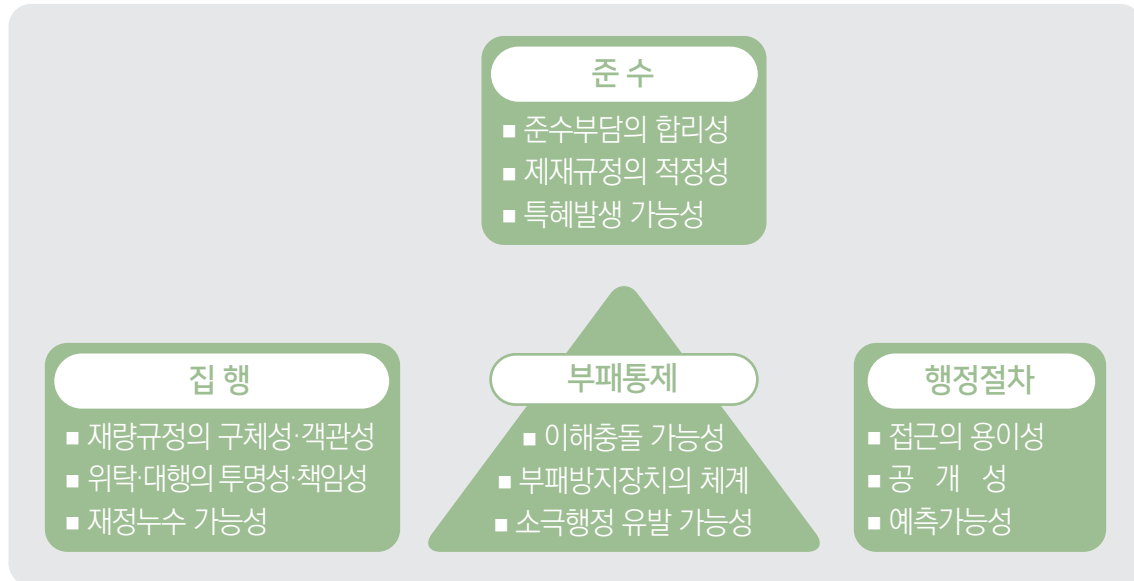
-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 실시
 - 부패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내부규정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부패영향평가 운영 체계

구 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단계 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 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 과제 제출	-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행 법령 평가	현안 과제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행정규칙 평가	제·개정 행정규칙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요청	-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현행 행정규칙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평가 -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 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
자치법규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제·개정 내부규정	-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요청	-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 평가요청 받은 정관·사규 평가
	현행 내부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공공기관등의 내부규정만 대상)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내부규정 선정·평가



5. 부패영향평가 기준



▶ 준수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 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집 행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행정절차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익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 부패통제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Corruption Risk Assessment Manual 2022



법령·행정규칙 부패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2. 평가자료 작성요령



1. 부패영향평가업무 처리절차

1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평가

1) 부패영향평가 요청

가.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 직제, 국호·국기·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 ⇒ 평가요청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추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 ⇒ 참고 :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3조의2

나. 평가요청 시 제출할 자료

구분	제출할 자료	비고
일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조문별 개정이유서 •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제정·전부개정 법령	• 법령안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법령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요청 시 공청회 자료, 연구용역 자료 등 추가 제출

다. 행정기관의 법령입안 부서는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쳐 제출

라.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평가기간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단계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실시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평가기간 연장 가능
 - ※ 평가기간 연장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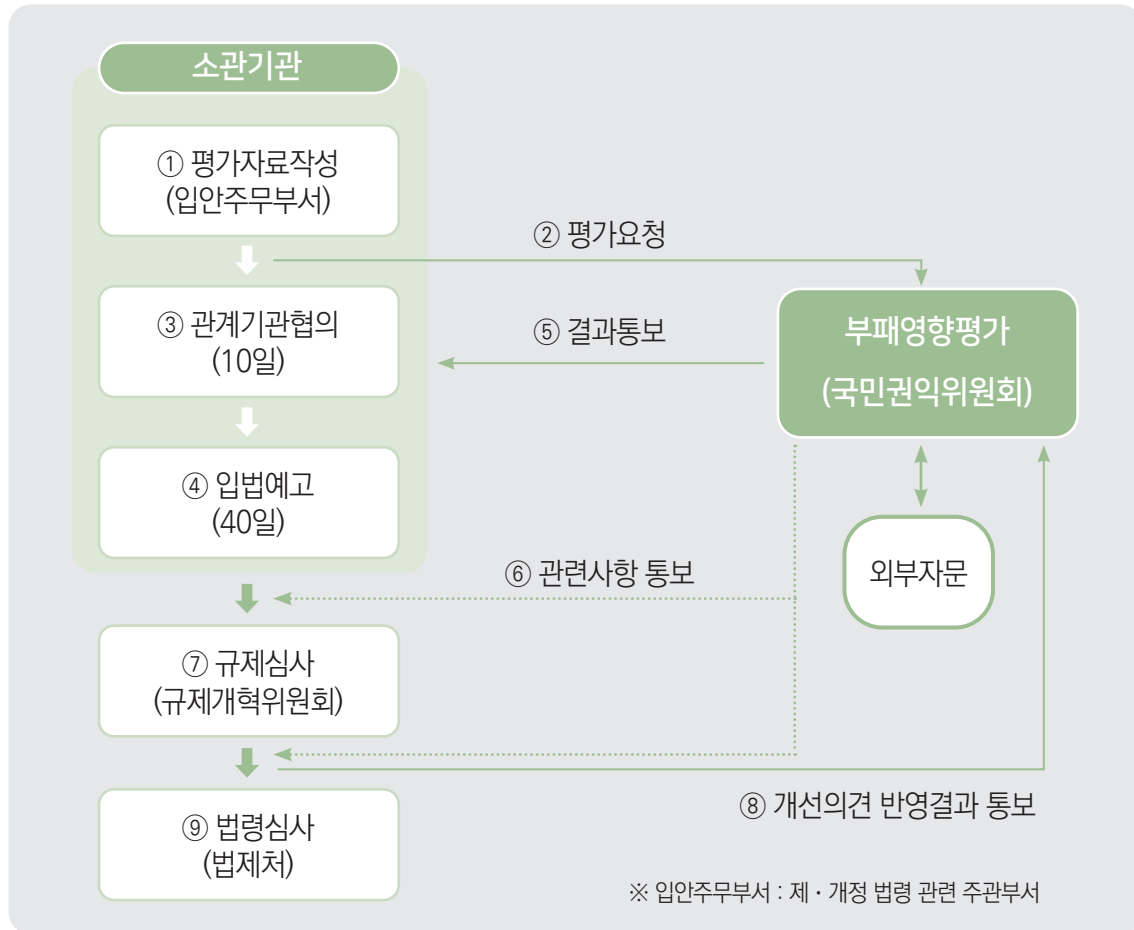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법령안 및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실시
 - 개정법령의 경우에는 개정되는 부분을 평가하면서 그 밖의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평가
- 평가단계에서 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다수부처 관련사항,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부패영향평가 자문 기구’ 또는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를 마친 경우 평가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소관기관에 통보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하여 각 업무에 활용토록 할 수 있음

3) 평가결과의 처리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 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자율평가체계 구축·운영 등
-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차관·국무회의 시 첨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선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 시 관련 의견 제출

제·개정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절차



2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

1) 현행 법령 평가과제 선정

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 수립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기관에 현행 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나. 현안과제 평가

- 중장기 과제와 별도로 제·개정 법령 평가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법령이나 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평가

2)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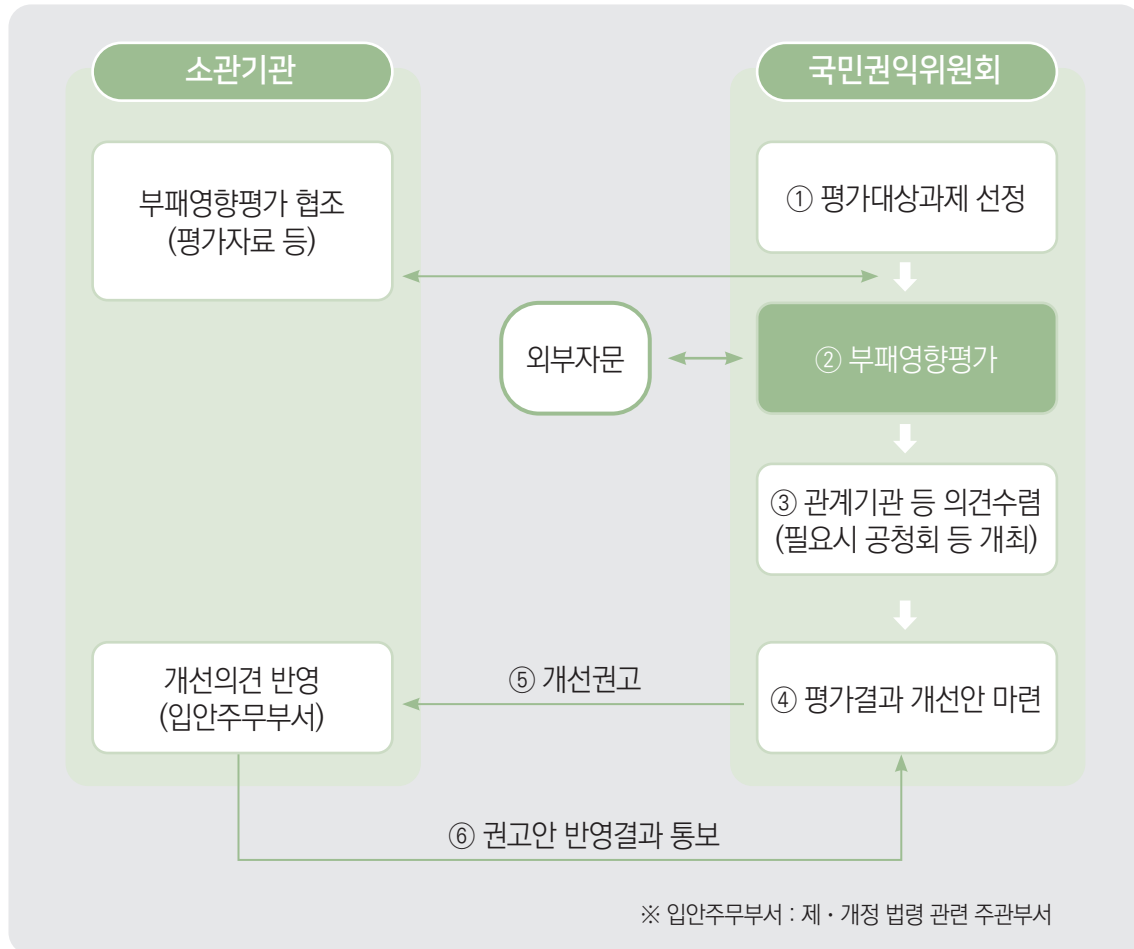
- 행정기관은 소관 법령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 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3) 평가결과의 처리

- 권고를 받은 법령등의 소관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법령등의 소관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평가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재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령등의 소관기관에 통보
 - ▶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3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1) 제·개정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가. 기관별 자율 평가체계 구축

-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보급

나.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행정기관은 행정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요청된 제·개정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법령안 평가에 준하여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 현행 행정규칙에 대한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행정규칙 중 부패유발요인이 많은 현행 행정규칙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평가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령(안)에 대한 평가 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평가
 - 행정기관은 소관 행정규칙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작성·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 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규칙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2. 평가자료 작성요령

1 개요

- 일부개정법령의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제정 또는 전부개정 법령의 경우에는 기초자료(표지) 외에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를 추가적으로 작성·제출

※ 일부개정법령의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 시 세부자료를 작성·제출

2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표지) 작성

1) 양 식

[별지 제1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정관 등)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 . .부터 . . .까지(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2) 작성 사례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도명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정관 등)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1. 기간통신사업자가신청요령및심사기준 2. 별정통신사업등록업무처리지침 3. 정보화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4. 우수신기술지정지원사업 5.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등					
소관기관	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5급 0000/ 02-2110-0000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0000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4급 0000/ 02-2110-0000		
입법일정(예정) ※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						
		협의기간	00.00.00.부터 00.00.00.까지(일간)					
	※입법예고	00.00.00.부터 00.00.00.까지(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기타자료	1. 기간통신사업자 연도별 출연금 납입현황 2.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사업별 평가표 등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0000과	서기관	000	02-2110-0000

3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작성 (각 문항별 작성 요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수

문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제·개정되는 부분이 국민 등에게 비용·희생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근거규정을 조·
항까지 기재

● 준수사항

법령 등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내용으로, 현금지출만이 아니라 법률상·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포함하여 서술

예시) 각종 구비서류, 사전신고, 교육참석, 정기보고, 정기검사, 지정품목의 사용,
특정시설·행위의 금지, 철거, 점업제한 등

● 주요 준수자(연락처)

준수부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대표적인 민원인 또는 법령의 적용
대상집단) 연락처를 기재

●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준수
부담의 필요성·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 <참고자료>

준수부담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하위법령, 행정규칙,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작성사례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1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 저장 · 운반 · 진열 등 금지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2	식품위생법 제8조	유독기구 등의 판매 · 사용 금지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0000) 한국도예협회 (031-632-0000)
3	식품위생법 제41조	유형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위생에 관한 교육받을 의무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4	식품위생법 제51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의무	한국외식업중앙회 (1688-0000)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3	유형종사자에게 필수적인 청결유지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	--

〈참고자료〉

1	유해식품 관련 언론보도자료
2	식품위생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자료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기재(별표 포함)

● 위반행위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등을 기재

● 제재현황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수준에 대하여 정리하여 서술
(자세한 제재내용이 별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략적으로 기재하고 관련자료
별도 붙임)

예시) 제재의 종류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타당성 등에 대해 설명

● <참고자료>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연구보고서, 공청회자료, 여론조사결과, 언론보도내용 등



작성사례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1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7조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등의 사회적 영향 및 위해수준을 고려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같은 행위의 발생 억제

〈참고자료〉

1	보조금의 위법·부당수수 및 목적외 사용 적발 사례 등 관련 통계자료 타 법령상의 유사 제재규정 현황 등
---	---

문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특정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제·개정 부분이나 근거규정을 조·항까지 기재

● 수혜대상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익)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가능성 있는 경우 (잠재적) 수혜자로 간주하여 기술

● 주요내용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혜택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재

● <추가설명>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1-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혜택 부여 사유·혜택수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설명

● <참고자료>

특혜발생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1	초·중등교육법 제33조, 시행령 제64조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사용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5	촉진지구내 지자체, 벤처기업	자금 등의 우선(우대) 지원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5조	개발사업시행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1	학교운영의 자율성·다양성 제고
2	지역특성에 맞는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전략 산업을 활성화
3	기업도시개발의 원활한 수행

〈참고자료〉

1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자료
---	------------------------

집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조·항)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여러 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량권별로
그 근거 규정을 조·항까지 모두 기재

● 재량의 내용

재량권자, 재량의 범위, 재량행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개괄적으로 기술

※ 법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효과의 선택 등에 있어 실무상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등의 재량적인 판단이 불가피하다면 역시 (사실상의) 재량규정으로 간주하여 기술



작성사례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1	하천법 제33조~제37조	하천구역을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징수
2	수산업법 제9조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계·영어조합법인·지구별수협에게 일정한 경우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및 외해양식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시행령 제11조(별표6)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허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4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및 시행령 제98조(별표19)	해양오염영향조사 결과 거짓 통보자, 오염물질 배출자, 해양환경 관리법상 서류비치, 제공,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의 가중·감경

참고 : 재량여부의 판단기준

- 법규정상 처분의 요건(기준) 부문에 불확정개념 또는 공백규정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이 되는 재량권이 존재
⇒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불확정개념이나 공백규정 등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사실상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가 존재
- 법조문의 효과부문에서 특정행위를 할 것인지의 여부 또는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재량권이 존재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할 수 있다”, “~한 때에는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행위(효과)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하여 행위재량(거부재량 포함)을 부여한 경우
⇒ 법규정이 명시적으로 “~한 때에는 ~를 하거나, ~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다수의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의 선택 가능성을 부여하는 경우
※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관에게 허가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일단 재량사항으로 평가서에 기재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량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표2-1>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표2-2>에 번호 기재

● 재량의 명칭(근거규정)

당해 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거나 해석상 알 수 있는 재량권의 핵심적 내용과 근거 규정 서술

● 재량권자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기재

●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 또는 고려사항으로 법령 등에 명시된 사항들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인·허가 여부, 취소·정지여부, 불확정 개념의 해석·적용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 가중·감경 기준 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재량권 통제장치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을 서술

●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경우 <표2-2>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추상적·주관적인 사유에 대해 부연설명

● 〈참고자료〉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량권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1	과징금 산정 (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1)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 별표1	50% 이내 또는 초과 감액, 전부 면제	초과 감액 시 의결서에 이유를 명시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1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경우와 같이 현실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해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
---	--

〈참고자료〉

1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위고시 제2014-12호)
---	--

문5-1.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① 명확

② 불명확

문5-2. 위탁·대행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추가설명〉 위탁·대행 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에 위탁·대행 관련 사항(재위탁포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 부여를 위한 지정도 포함하여 기재

●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위탁·대행의 대표적 사무를 기재

● 법적근거

위탁·대행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기재

● 위탁·대행 요건

위탁·대행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 등을 요약하여 관련조항과 함께 기재하고,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한계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법령 및 조항을 기재

● 선정절차

위탁·대행 대상자 선정절차 등을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 관리·감독장치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장치를 요약하여 관련 조항과 함께 기재 (제재규정도 함께 기재)

● <추가설명>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기준에 일부 부합하지 않으나, 합리적인 이유 또는 대체 규정 등이 있는 경우 등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표2-3>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설명

● <참고자료>

기타 위탁·대행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붙이고, 붙임 목록을 작성

예시) 연구보고서, 공청회 자료 등



작성사례

<표2-3> 위탁·대행 규정

번호	위탁·대행사무의 명칭	법적근거	위탁·대행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한계	선정절차	관리·감독 장치
1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4항	자격종목에 전문·대표성을 지닌 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 인력,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시행령 제29조 제4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제6항	위탁요청서 제출→공고→ 수탁신청서 제출→심의· 지정·공고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 가, 위탁취소, 공무원의제 (국가기술 자격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2	지정교육· 훈련과정 운영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항	교수진, 실험· 실습 시설 및 장비, 교과 과정 및 내용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자 (법 제10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제2항	지정신청→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 →심의·지정· 공고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 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 (국가기술 자격법 제24조의4, 제24조의5)

문6-1.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 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 · 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에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모두 열거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규정 기재

● 지원종류

재정지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보조금, 장려금, 출연금, 국·공유재산의 사용, 대부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 지원대상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 대상

● 지원기준·절차

법령에 명시된 재정지원의 기준·절차 등을 기재

※ 별표, 하위법규 등으로 세부기준을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경우 표 안에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고 나머지는 별도 자료로 붙임

● 유사 지원 제도

같은 지원대상에게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 기재

● 관리·감독 장치

위법·부당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 <추가설명>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유, 재정지원을 위한 기준 및 범위 등이 불명확한 사유 및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 등을 <표2-4>에서 부여한 일련번호에 따라 설명

● <참고자료>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재정지원기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등



작성사례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 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 · 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1	숙련기술 장려법 제10조	장려금	대통령으로 정하는 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생산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선정 사업주 추천을 받아 신청. 신청 내용 및 절차 · 선정 기준 · 선정인원 4/30까지 공고 (시행령 제9조)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시행령 제22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 포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법 제19조)

〈추가설명〉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1	선정 종목(96개 직종)이 다양하고, 각 선정 종목 간 기술수준이나 심사기준이 상이하므로 공고의 방법으로 정하는 것은 다소 불가피함(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설치하여 공정성 확보)
---	--

〈참고자료〉

1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칙(산업인력관리공단 내규)
---	--

▶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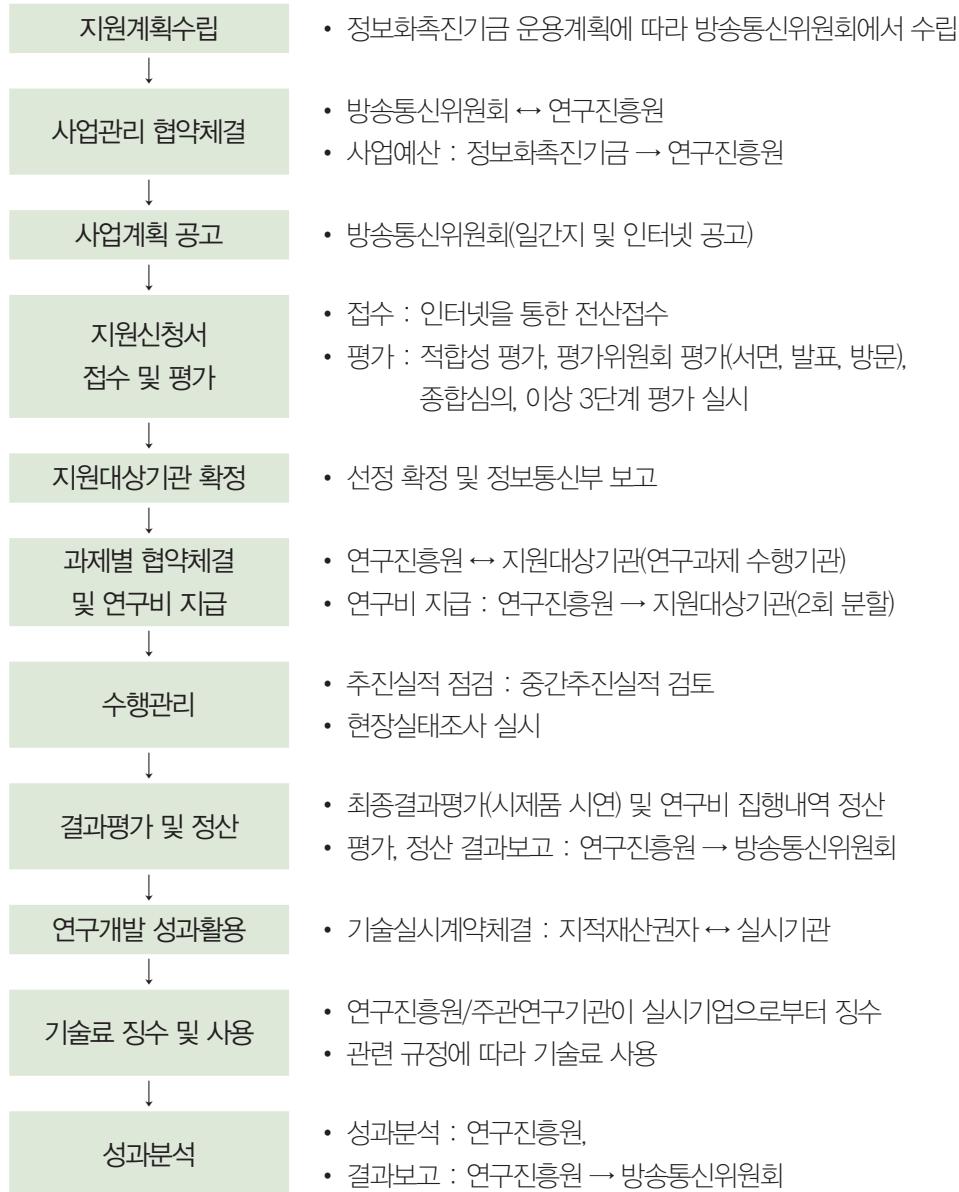
작성요령

- 민원인의 입장에서 평가대상 업무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흐름도 작성
- 업무처리 흐름도상의 활동단위별로 근거규정까지 함께 기재(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하위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 관련법규정까지 포함)



작성사례

〈표3-1〉 정보통신출연사업 처리절차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하여 국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참여기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 기재

● 내 용

정책결정과정이거나 의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참여 장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예시)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 <추가설명>

행정절차법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참여기회가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여 서술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함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절차의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유를 설명
- ㉡ 정보유출 등 참여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의 최소화 필요
 - ⇒ 정보유출시 우려되는 부작용 사례 제시 및 파급효과가 심대함을 설명
-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유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
-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
- ㉤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촉진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임을 설명

● <참고자료>

접근의 용이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 첨부

예시) 참여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작성사례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광역도시계획 수립·변경 시 공청회 개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3	도로법 제26조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4	최저임금법 제9조	최저임금안에 대한 고시 및 이의제기 절차

문8.【공개성】 정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정보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거조항 기재

● 내 용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

● <추가설명>

정보공개법의 규정 외에 당해 법령이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정보제공이 없다면, 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서술

● <참고자료>

공개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첨부
예시) 정보공개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연구자료, 공청회자료 등



작성사례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5항	대학교원 채용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기준 등 사전공개
2	도로법 시행규칙 제14조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개시·폐지 시 도로 종류와 노선번호·노선명, 구간, 개시일 또는 폐지일 등에 대해 관보나 공보에 공고
3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시행령 제8조의4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순위 등 공표
4	건축법 제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문9.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준비사항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절차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처리결과

민원인 입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기재하고 내용 서술

● 소요기간

당해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조항을 기재

● <추가설명>

행정절차 및 처리결과 등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가능

● <참고자료>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예시) 당해 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법규, 관련 연구자료 등



작성사례

〈사례1〉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조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등
처리절차	미규정	
처리결과	미규정	
소요기간	미규정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1	의약품 등의 안정성·유효성 여부는 고도의 전문성과 과학적 검증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기간과 심사결과를 쉽게 예단하기 어려움
---	---

〈참고자료〉

1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136호)
2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식약처고시 제2014-59호)
3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5-41호)



작성사례

〈사례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등
처리절차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허가신청→관계기관협의→허가→고시
처리결과	미규정	
소요기간	미규정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1	허가여부 및 허가기간은 점·사용의 목적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예측하기 어려움
---	---

〈참고자료〉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해수부고시 제2013-19호)
---	---

문10.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 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 호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된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근거규정

이해충돌방지장치 근거규정 기재

● 내 용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의 구체적인 종류·내용 등을 서술
예시) 위원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규정,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규정 등

● <추가설명>

당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 <참고자료>

이해충돌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4-1〉 이해충돌 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 용
1	발명진흥법 제41조, 제41조의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규정 및 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및 해촉 규정 마련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7의2, 제17조의3, 제4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회의록 공개 및 민간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 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규정

문11.【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있거나 부패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부패사례

관련 부패사례를 간략히 기재

※ 부패신고·처리 사건, 내부감사 또는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지적사항, 언론보도 사항 포함

● 관련규정

부패가 발생한 업무 관련 규정 기재

● 부패통제장치 마련 여부

제·개정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 서술

예시) 지도·단속·점검 시 2인 이상 합동 조사, 민간참여제도(민간위원, 협의회 등), 심사·평가·조정 시 위원회 조직 활용, 납품비리 방지를 위한 물품검증시스템 강화 등

※ 관련 부패사례가 없어도 발생가능한 부패방지를 위해 통제장치를 마련한 경우도 기재

●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설명

<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예시) >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별도의 부패통제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예시)〉

- ㉟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㊱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 〈참고자료〉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작성사례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1	거액대출을 받기 위해 뇌물공여를 통해 허위감정평가서 발급받은 사례 적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시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
4	국방조달사업 개산계약에 따른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과다산정, 하도급업체와의 이면계약 등 부패행위 발생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8조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문12.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4-3〉 소극행정 유발 규정

번호	관련 법령	근거 부재 여부	부작위 유발 여부	직무태만 유발 여부

〈추가설명〉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재정 손실 발생 가능 사유

〈참고자료〉

1	
2	



작성요령

● **번호**

제·개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하고 일련번호 부여

● **관련 법령**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이 있는 법령 기재

● **근거 부재 여부**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부작위 유발 여부**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령으로 인하여 부작위가 유발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직무태만 유발 여부**

법령으로 인해 직무태만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 **〈추가설명〉**

법령의 부재 또는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어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 손실이 우려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참고자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부패영향평가 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별도로 붙이고, 붙임 목록 작성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1. 의 의

- 조례·규칙의 규정 중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 또는 규정의 충돌·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개선·정비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2. 평가 대상

- 제·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3.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예시)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 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가 직권으로 평가 가능



4. 평가 방법

1 제·개정 자치 법규

- **평가부서**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담당부서(감사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 지방자치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 예고 단계에서 평가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 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분)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12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조
- **평가절차**
 - ①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 (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 및 제·개정 관련 설명자료 등을 붙여 평가담당 부서에 평가 의뢰
 -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②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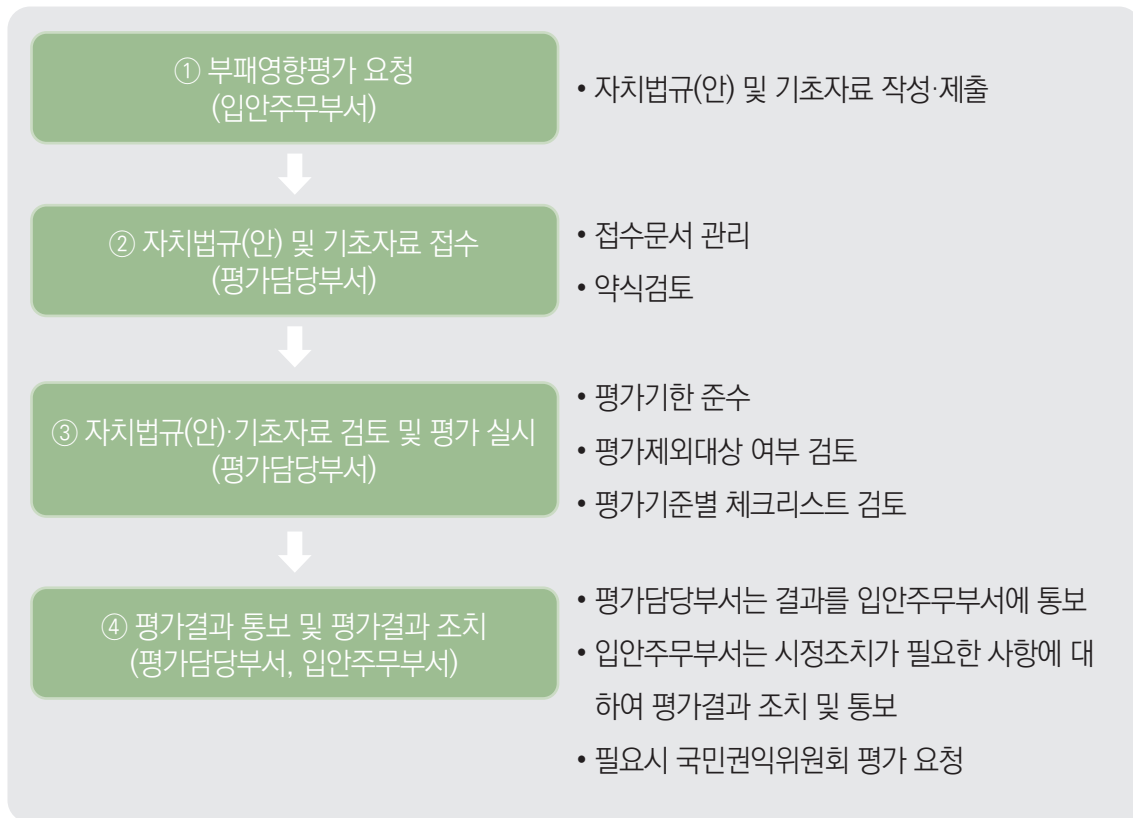
- 접수된 문서는 접수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에 대해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③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④ 평가결과 조치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 통보서 및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 ※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 간 이견이 있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제8항)

평가 업무흐름도



2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자치법규업무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담당부서가 평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의견에 대해 관련부서(타기관)와 협의
 -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평가결과의 처리

- 평가담당부서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세부평가서 및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 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자치법규 개정
 - ※ 자치단체가 특정분야의 현행자치법규에 대해 일괄정비 차원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에 교육 및 자문 등 요청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자치법규를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치법규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 평가자료 제출 : 각 지방자치단체

- 각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자치법규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자료(운용실태, 통계, 해당업무 계획 등 관련 서류, 관계 민원 서류, 감사·수사 결과 등)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

● 평가결과의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후 각 지방자치단체 개선조치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권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견 처리 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자치법규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78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79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80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붙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 요구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

현 황 :

문 제 점 :

검토결과 :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부패영향평가

1. 의 의
2. 평가 대상
3. 평가 제외 대상
4. 평가 방법



1. 의 의

- 공직유관단체 규정인 사규·정관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입안단계에서 제거·정비함으로써 정책수립·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2007.12.28. 도입)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



2. 평가 대상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제정·관리하는 규정, 세칙, 지침, 요령 등 내부규정 중
 - 회계, 계약, 영업, 건설·건축, 자산관리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부규정
 - 위탁, 인사, 감사, 조사, 위원회 등 부패유발요인이 잠재하기 쉬운 업무 관련 내부규정
 - 기타 부패사건, 감사·수사사건, 국회요구 등에 의해 문제점이나 개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부규정



3. 평가 제외 대상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내부규정
 -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제안,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등
 - 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휴양·복지·문화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내부규정
 - 휴양소, 체육시설, 문화·예술시설,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는 직권으로 평가 실시 가능



4. 평가 방법

1 제·개정 내부규정

▶ 공직유관단체 자체평가

- 평가대상

평가제외 대상 규정 등을 제외한 규정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 평가부서

공직유관단체의 평가담당부서

※ 공직유관단체별 조직특성 및 업무관행 등을 고려하여 담당부서 결정

-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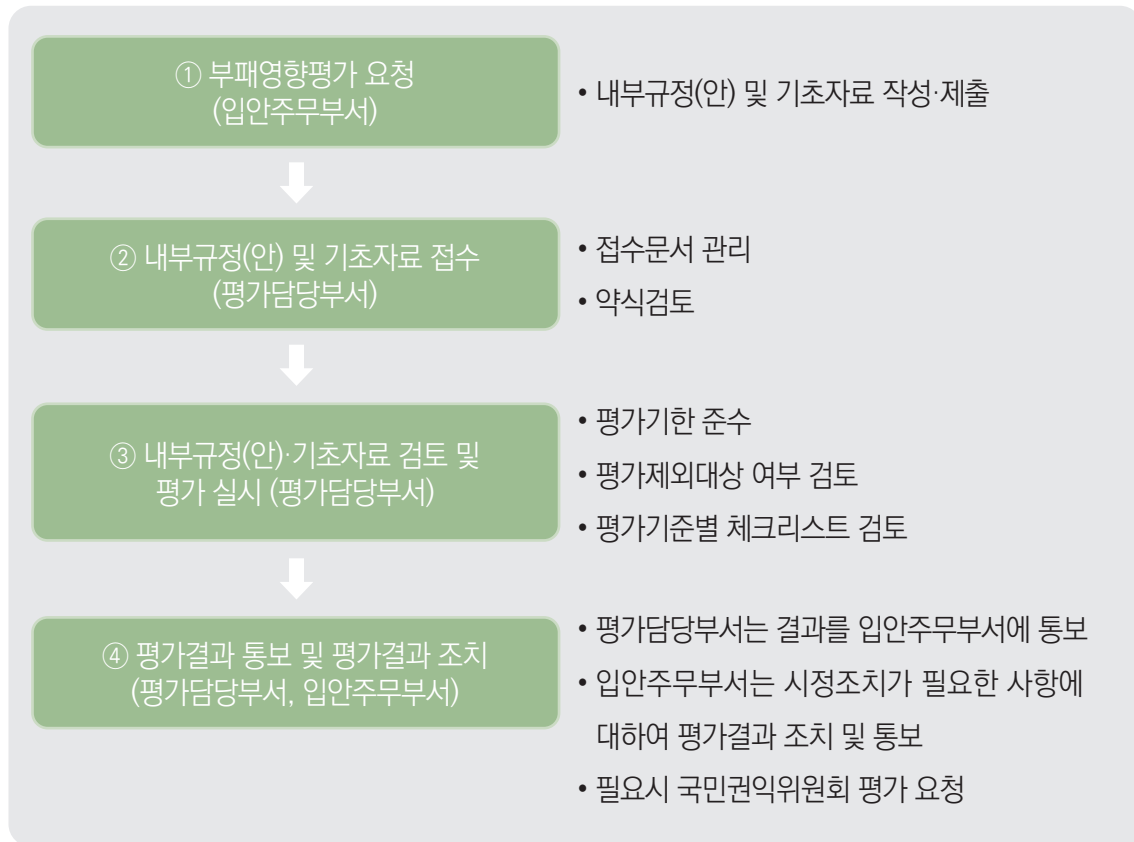
12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참조

- 평가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평가절차를 참고하여 각 기관의 내부사정에 맞춰 적용

제·개정 내부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요청에 의한 평가

-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9항)
- **평가대상**
 - 공직유관단체 자체적으로 개선 정비가 곤란한 사안 등
- **평가절차**
 -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유 및 해당기관 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평가 요청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요청을 받은 때에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해당 공직유관단체에 서면으로 결과 통보
 - 결과를 통보 받은 공직유관단체는 해당 규정에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 여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자체적으로 개선·정비가 곤란한 사안

- 부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유관기관 또는 관련부서와 이해관계 대립으로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경우
- 내부규정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 그 밖에 공직유관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2 현행 내부규정

▶ 공직유관단체 자체평가

● 평가대상

-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조리사안 등 부패유발요인이 있어 제·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 자체평가

● 평가주체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 내부규정 소관부서(해당부서)는 부패유발요인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내부규정 등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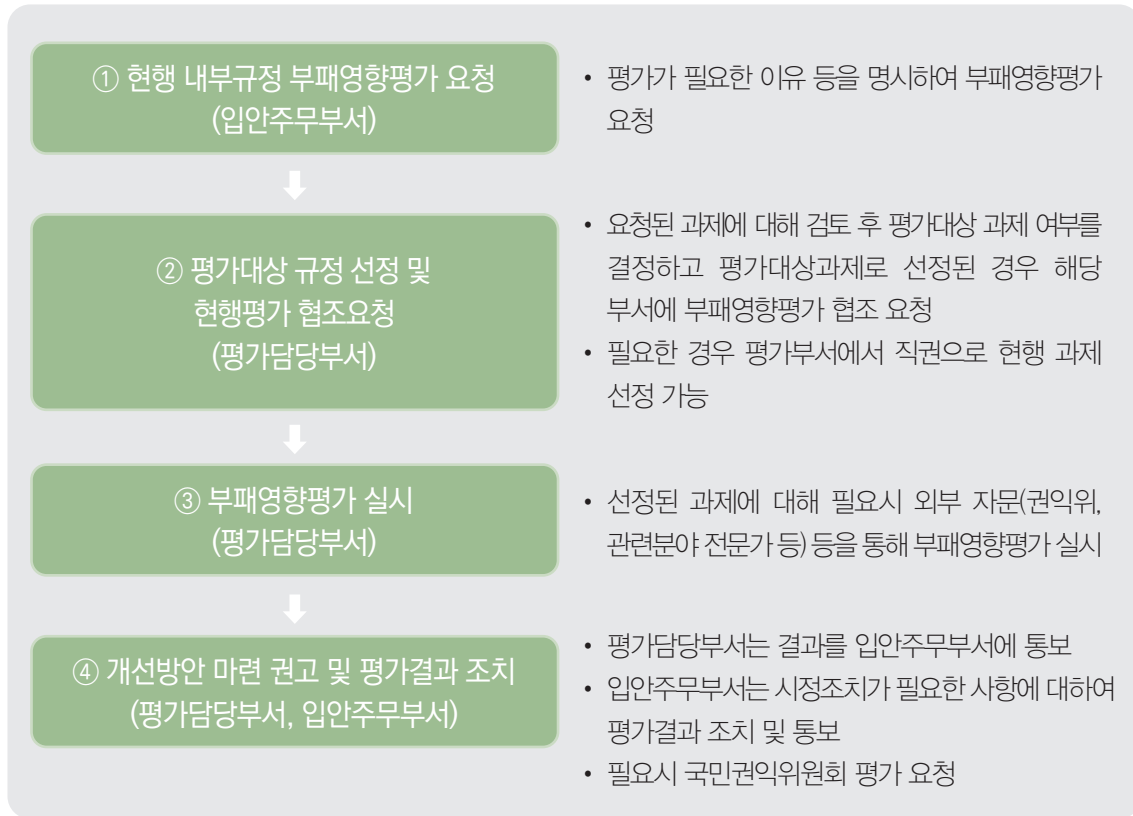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담당부서가 평가하는 경우 해당부서에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부서는 평가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
- 평가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는 내부규정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의견에 대해 관련부서(타기관)와 협의
 -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 평가결과와 처리

- 평가담당부서는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세부평가서 및 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해당부서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후 내부규정 심의위원회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제출
- 해당부서가 직접 평가하여 개선의견을 도출한 경우 세부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담당부서에 통보한 후 자치법규 개정
 - ※ 공직유관단체가 특정분야의 현행 내부규정에 대해 일괄정비 차원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교육 및 자문 등 요청 가능

현행 내부규정 자율평가 업무흐름도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평가대상기관

- 공직유관단체 중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상 지방공사·지방공단(이하 “공공기관등”)

●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공공기관등에서 부패행위가 지속되거나 부패유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내부규정을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부패영향평가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평가 과정에서 토론회, 간담회 등의 외부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등·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실태조사 병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 평가자료 제출 : 각 공공기관등

- 각 공공기관등은 소관 내부규정이 평가과제로 선정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요구에 따라 평가자료 등을 제출(「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자료(운용실태, 통계, 해당업무 계획 등 관련 서류, 관계 민원서류, 감사·수사 결과 등)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송부

● 평가결과의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의 통보 후 각 공공기관등 개선조치

-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내부규정 소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 및 이행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등의 개선의견 처리 상황 및 협조 이행상황을 확인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평가 서식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91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92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93

[붙임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명				
구 분	조 례	개 정	현 행	
형 식	정관, 규정, 세칙, 지침 등			
규정 명 (정관, 규정, 시행세칙, 지침 등)	평가대상 규정명			
소관부서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제·개정 일정(예정)	관계 부서 협의	대상부서		
		협의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일간)	
	완료예정일	20 . . . 부터 20 . . . 까지(일간)		
의견수렴절차	1. 제·개정 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절차가 있는 경우 기재			
별도 붙임자료	1. 제·개정(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2. 필요한 경우 부패유발문제점에 대한 검토의견 및 관련자료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 1.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접수순으로 기재
2. 「법령명」란은 상위법령이 있는 내부규정 평가의 경우에만 기재

[붙임 2] 평가결과 통보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내부규정 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검토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세부평가서 (별도 첨부)	- 개선(안) 수용 여부 – 입안 주무부서에 개선(안) 반영 여부를 추후 확인 기재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경우	원안 동의	원안 동의(문서 통보)	

평가결과 조치사항

- 검토 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담당부서는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입안 주무부서에 문서로 통보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안 동의” 문서를 통보.
- 입안 주무부서는 세부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담당부서에 통보
 - 개선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제·개정

[붙임 3] 세부평가서 작성 서식

세부 평가서

규정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

현 황 :

문 제 점 :

검토결과 :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Corruption Risk Assessment Manual 2022



평가기준별 검토 요령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2) 위탁 · 대행의 투명성 · 책임성
(3) 재정누수 가능성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2) 공개성
(3) 예측 가능성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1.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1 개요

-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가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각종 비용 또는 희생 등이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인가를 판단
- 준수부담이 과도할 경우 법령 등의 적용대상자가 뇌물제공 등의 부패행위를 통해 그 부담을 면제 혹은 완화하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2 평가절차

- ① 준수부담의 법적근거, 절차, 요건 등 검토
- ②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③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3 평가요령

▶ 준수부담의 법적 근거 등 검토

- 다수의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근거, 요건, 대상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지를 검토

- 현금지출, 현물 및 서비스 제공과 같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법률상 작위·부작위 의무, 사실상의 희생, 기회비용 등까지 검토

예시

인허가 서류 등 자료의 제출·보완, 부담금·사용료의 납부, 건축·사용의 제한, 특정 시설 또는 특정행위의 금지, 재위탁·하도급의 금지, 일정기간 내 공사시행, 각종 보고·신고·통보·게시 등

▶ 준수부담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준수부담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또는 준수부담의 도입근거·배경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

예시

식품위생법 제72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식품·기구 등의 폐기 등을 규정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나 기구 등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성 때문에 신속히 폐기·회수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 준수부담의 합리화 방안 등 검토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검토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는지 검토
 - 각종 비용, 희생 등의 준수부담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적용대상으로 하는지 등

예시

전경련·경총 등 사업자 단체, 농어민협회·재향군인회·음식점중앙회·대한변호사회 등 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재건축조합 등 조합, 관련 시민단체 등

- 행정 편의주의 시각에서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요구하거나 국민생활을 제한하는지 검토

예시

허가제는 등록제로, 등록제는 신고사항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지,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의 제재를 하고 있는지 등

- 당해 부담이외에 이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준수부담의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5 평가예시

예시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 11. (생략)	(생략)	(생략)
12.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2)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 10명 이상 ○ 5명 이상 9명 이하 ○ 3명 이상 4명 이하 ○ 2명 이하	법 제32조 제1항 제12호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 감차 조치(2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13. ~ 16. (생략)	(생략)	(생략)

※ 비교

1. ~ 2. (생략)

6.의2. 위 표 제12호가목에 따라 감차 조치하는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보유차량의 전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7. ~ 10. (생략)

▶ 현 황

-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주의의무 강화를 위해 교통사고로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 (사망자가 10인 이상인 사고)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되, 1/5의 값이 4 이하이면 전부 감차
 - (사망자가 5인 이상 9인 이하인 사고) 보유차량의 1/10대를 감차하되, 1/10의 값이 2 이하이면 전부 감차 *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문제점

- 보유차량이 20대 이하인 사업자(전체사업자의 76.5%, 8,537개 해당)는 5인 이상 사망사고 시 사망자 수와 관계없이 전부 감차되어, 합리적 사유 없이 과도한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준수부담의 합리성 결여
 - (5인 사망 사고 시) 보유차량이 30대인 사업자는 3대 감차되는 반면, 보유차량이 20대인 사업자는 20대 전부를 감차

[보유차량 20대 및 30대 사업자 간 감차대수 비교]

사망자 수 보유차량	10인 이상	5인 ~ 9인	비고
30대	6대 감차 ($30 \times 1/5 = 6$)	3대 감차 ($30 \times 1/10 = 3$)	사망자 수에 따라 1/5 또는 1/10 감차
20대	20대 감차 ($20 \times 1/5 = 4$)	20대 감차 ($20 \times 1/10 = 2$)	1/5의 값이 4, 1/10의 값이 2 이하이면 전부 감차

- (보유차량이 25대인 사업자) 소수점 절사로 인해 사망자가 적은 경우에 더 중한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준수부담의 합리성 결여

사망자 수 보유차량	10인 이상	5인 ~ 9인	비고
25대	5대 감차 ($25 \times 1/5 = 5$)	25대 감차 ($20 \times 1/10 = 2.5$)	1/10의 값이 2 이하인 경우 전부 감차

참고자료

※ 차량보유대수별 운송업체 현황(화물운송연합회 내부조사자료, '16.12.)

구 분		전 체	20대 이하				20대 초과			
			1대	2~10대	11~20대	계	21~30대	31~50대	51~100대	100대 초과
업체	업체수	11,157	3,140	4,082	1,315	8,537	773	859	739	249
	비율(%)	100	28.1	36.6	11.8	76.5	6.9	7.7	6.6	2.2
보유 차량	대수	185,228	3,140	18,973	19,269	41,382	18,827	33,930	50,226	40,863
	비율(%)	100	1.7	10.2	10.4	22.3	10.2	18.3	27.1	22.1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영세사업자의 준수부담 수준 적정화
 - 의무자의 책임정도, 부담능력 및 유사 부담과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의 준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고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비교

6. 위 표 제18호가목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2대 이상의 감차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에는 4대를 감차 조치하고,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를 감차 조치하여야 한다.

예시2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9조(법 제53조 및 제5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횟수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현 황

- 제정령안 제17조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
 - 법 제29조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제한
 - ※ '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를 사용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사업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분류

■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의 기준(법 제8조제1항)

- 해당 사업이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면허의 기준(법 제10조제2항)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7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문제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과다 부과 우려
 - 법 제29조제1항은 사업 및 자본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2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제정령안 제17조제2항은 과징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가중하는 경우의 과징금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법상 최고액인 20억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등 상위법에 저촉되며 수범자의 과도한 부담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징금 가중 부과 시 법상 상한액을 지키도록 명시
 - 과징금을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항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액(법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재규정의 적정성

1 개요

- 제재수준이 과도하게 높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처벌을 회피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거나, 지나치게 미약하여 다소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위반행위를 범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지 검토
-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규정이 실효성을 갖는가를 판단하고 제재의 정도가 부패방지에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를 범할 유인이 존재하는지 등을 평가

2 평가절차

- ① 제재규정 검토
- ②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③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검토
- ④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⑤ 제재의 적정화 방안 강구

3 평가요령

▶ 제재규정 검토

- 제·개정되는 부분 또는 평가대상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거규정(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및 관련 규정을 검토

※ 제재의 예시

- ▶ 영업허가의 취소·철회·정지
- ▶ 형벌, 과태료, 가산세·부당이득금·가산금, 과징금·부과금
- ▶ 기타 위반사실 공표, 취업제한, 공급거부, 관허사업 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 제재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검토

- 제재규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발생원인 및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피해규모 및 문제의 심각성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 사례와 비교 · 검토

- 다른 법령에서 당해 위반행위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제재내용 및 정도, 근거규정 조사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평가대상 법령의 제재수준이 어떠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과 비교하여 적당한 수준인지 판단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약한 경우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검토

▶ 제재수준의 적정성 검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경중·횟수·정도 검토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유형·정도 검토
- 제재수준이 위반행위를 통제하는 데 적절한 수준인지 검토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에 비해 대상법령이 합리적 이유 또는 근거 없이 과도하거나 미약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 재발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

▶ 제재수준의 적정화 방안 강구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지 검토

참고자료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의 법정형 결정기준》

각급 기관의 제 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처벌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의 개선방향'을 수립·통보('09년)하였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2011.1.1.국회사무처 예규 제30호)에서도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징역	벌금형 기준 범위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2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3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

※ 다만, 개별 법률의 특성과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 필요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5 평가예시

예시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과징금 부과기준

1.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가. 과징금 부과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 2) 다수의 납품업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3) 1)과 2)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정거래법 제55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징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달성할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 3. (생략)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현 황

- 개정안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규정하던 과징금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상향 규정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 과징금 부과 실익이 크지 않거나 과징금 부과로 달성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

▶ 문제점

- 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징금 부과에 있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사유 등으로 부과 예외를 규정하는 등 제재규정의 적정성 미흡
 -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과징금 부과를 회피하고자 부정청탁을 하는 등의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 유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과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칫 위법행위를 유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사 법령에서 과징금 부과 예외를 규정한 입법례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과징금 부과 예외 조항 삭제
 - 과징금 부과 예외 조항 삭제를 통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제재규정의 적정성 제고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8조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 여부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위반행위로 인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경우
- 나. 다수의 납품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다.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예시2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6(산림레포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레포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레포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 아니면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현 황

🔍 개정이유

-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 분야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자격부여) 산림청장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
- (담당업무)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산림레포츠시설* 등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거나 지도
 - * 산림레포츠시설(산림휴양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오리에티어링, 암벽 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쥘라인·트리탑 등)
 - 안전한 산림레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및 지도할 수 있어, 산림레포츠 안전사고 예방 가능

(참고) 관련보도(산림레포츠 사고)

제천 청풍랜드 쥘라인 타던 30대 여성 이용객 2명 중상('18.9.6, 충북일보)

- (사고) 하강레저시설을 타던 A씨 등 2명이 수면 위에 떠있는 수상비행장 난간 등에 부딪혀 골반과 무릎이 골절되고 허리를 부상당하는 중상을 입음.
- (원인) 최근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청풍호 수위가 올라가며 물위에 떠있던 난간이 상승함에 따라 이용객이 하강레저시설을 타고 지나는 길목을 가로막아 사고 발생

- (활용·지원) 산림청장·지자체장은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안 제11조의7제1항)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안 제11조의7제2항)

▶ 문제점

- 법률에서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외에는 이러한 자격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무자격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명칭사용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



(3) 특혜발생 가능성

1 개요

- 법령 등으로 인해 특정인 또는 단체에게 특혜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특혜를 획득·유지·확대하는 과정에서 뇌물제공 등 부패행위가 발생되거나 용인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2 평가절차

- ① 수익적 규정 검토
- ②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 ③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형평성 검토
- ④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3 평가요령

▶ 수익적 규정 검토

- 법령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혜택이나 반사적 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혜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 및 그에 근거한 처분내용을 모두 검토
- 구체적인 수익내용이 하위법규에 위임된 경우 하위법규의 관련조항 검토

예시

입찰자격인정, 계약(조건)우대, 사업권부여, 사용료면제, 우선배정, 과징금감면, 보조금지급, 검사기간단축, 공사계약, 입찰참가자평가, 평가위원선정, 자금지원, 허가, 특허, 인가, 면허 등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정계층 등에 대한 수익 발생 가능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의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는지 검토

예시

정책이나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가점 내지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진입의 장벽을 만드는 경우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유사 사례와의 적정성 · 형평성 검토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

▶ 특혜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 통제장치 마련 여부 검토

-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등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예시

수익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유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뇌물공여 등 부패행위자 수혜자격 박탈, 혜택 부여 규정 유효기간 설정 등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5 평가예시

예시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5(관리비 등)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현황

☞ 개정이유

-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선임방식과 선임주체를 구체화하고 관리비의 공개의무 및 관리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 개정안에서는 ① 입점상인의 동의권 행사방법, ② 관리비의 세부항목·금융기관 예치의무·공개방법, ③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법,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및 관리규정 제정 의무 등을 규정

- 개정안에서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입점상인들에게 청구하여 수령한 관리비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4종의 기관을 명시 (개정안 제7조의5 제5항)

- ①「은행법」에 따른 은행, ②「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③「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정하여 규정

▶ 문제점

- 일부 금융기관만을 관리비 등 예치 가능 기관으로 규정하여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특혜발생 가능성 우려
 - 대규모점포등관리자로 하여금 관리비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예치 가능한 금융기관을 한정적으로 규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 타당
 - 그러나, 개정안 제7조의5제5항은 특별한 이유 없이 4종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관리비 등 예치가 가능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에 한하여 관리비 등의 예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되어 특혜발생 소지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일반 예금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모두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관리비등)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예시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신설)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현 황

- 자연휴양림 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추가
- 위탁대상에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자연휴양림 위탁현황(‘14. 12월 기준)〉

소유 주체	휴양림 수	수탁기관				
		지자체	지방공사 · 공단	산림조합	독립가 임업후계자 산림기술자	15년 이상 산림분야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국가	2	2				
지자체	21		13	3	1	4

▶ 문제점

- 퇴직공무원 또는 특정개인에 대한 특혜 발생 우려
 - 공익적인 자연휴양림의 위탁대상에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하여 공무원 특혜로 인한 사회적 비판 우려

☑ 경남 ○○군 △△ 등 3개 휴양림은 퇴직공무원 단체(8명)에 위탁

- 실질적 운영은 수탁자 단체가 아니라 (주)○○개발의 대표가 하고 있음
- 연간 약 10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운영자 인건비는 경비로 처리되어 순수익에 불포함)

- 또한, 위탁대상을 대부분 법인·단체로 하고 있으나,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는 개인자격도 가능하도록 해 특혜 발생 우려

☑ 전남 ○○군 △△ 휴양림은 개인(임업후계자)에게 위탁

- 연간 약 120백만원의 순수익 발생 (부부 인건비 연간 약 60백만원 순수익에 불포함)
 - ▶ 시설이용료가 타지역에 비해 평균보다 높아 수입증대 보장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탁대상의 특혜요인 개선
 - 15년 이상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삭제
 -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개인 위탁 조문 삭제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 개요

- 행정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추상적·다의적인 재량규정은 집행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이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재량권자,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재량범위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2 평가절차

- ①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②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③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④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⑤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3 평가요령

▶ 재량권자의 명확성 검토

- 재량권 행사자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판단의 기준·재량행사절차의 구체성 검토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가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 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지 검토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이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인지 검토

▶ 재량범위의 적정성 검토

- 재량 행사범위가 구체적인지 검토
 - 재량으로 선택가능한 행위나 효과의 종류(불확정개념의 해석·적용, 인·허가 여부, 취소·정지 여부 등), 기간의 장·단(취소·정지기간 등), 금액의 상한·하한(과태료·과징금의 가중·경감)의 적정성 검토

예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하나의 조문에서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여 취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에서 어느 하나의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재량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경우 설명 필요

- 평가대상 법령이 다른 유사 법령에서 규정된 재량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하지 않은지 검토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 검토

- 불명확한 재량규정으로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 검토 결과 재량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수범자가 재량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지,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있는지 검토

▶ 과도한 재량권행사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검토

- 재량권 행사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견제장치(사전통지절차, 의견 청취절차 등)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와 관련된 정보(회의록, 공문 등)에 대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량권 행사 기준이 설정·공표 되어있는지 검토

예시

위반사업자의 납부능력 부족, 시장·산업 여건의 변동 또는 악화,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하게 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 등에 명시

불명확한 재량의 해결방안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세부개념으로 구체화

예시

[허가기준] 허가를 함으로써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을 것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을 설명하는 정의규정을 통한 보완

예시

[등록취소]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이나 아동에 유해한 만화 등을 출판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의]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를 말한다.

- 불명확한 법규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 예시

예시

[집회 및 시위금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불확정 개념의 계량화

예시

‘경제적 신용’, ‘대외적 신인도’, ‘충분한 인력과 시설·설비’, ‘재무건전성’ 등의 불확정 개념
 ⇒ 자본금, 시설·설비의 종류·규격·면적, 종사인력의 자격·수 등으로 계량화

-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해석하는 하위규정 정립

예시

구.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의 정의를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이를 ‘고용보험업무편람’에서 임금에 포함되는 것,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 구체화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5 평가예시

예시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주소
2. 시정권고의 이유
3. 시정권고의 내용
4. 시정기한사

▶ 현 황

- 타인과 동일한 상호·상표를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 등을 한 자에게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권고(행위 중지, 표지 제거 및 폐기 등)를 하는 경우, 시정권고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근거를 신설함

▶ 문제점

- 시정권고 사실 공표 기준 및 공표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
 - 시정권고 사실이 공표될 경우 그 시정권고를 받은 자의 사회적 가치 판단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공표하느냐에 따라 공표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공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재량권 부여
 - 따라서,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자체를 막거나 비교적 파급효과가 적은 공표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부패행위 가능성 존재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기준 및 공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정권고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시정권고의 이유
2. 시정권고의 내용
3. 시정기한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의 이유 및 내용

② 특허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시2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3]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기준(안) (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 나. (생략)

다.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할 때에는 개별기준에 따르되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가중·감경할 수 있다.

라. 차등적 재정지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26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마. (생략)

▶ 현 황

- 개정안은 유치원이 유치원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비 인상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기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

▶ 문제점

-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 불명확
 -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을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 시 상황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 미비
 - 이는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부패행위가 발생할 수 있음

▶ 검토결과: 개선권고

● 행정처분의 감경·가중 기준 구체화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 등 행정처분의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 경우 등 행정처분의 가중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다.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1 개요

- 행정권한·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대행하는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지 평가
 - ※ ‘위탁·대행’ 외 ‘행정업무의 부여를 위한 지정’의 경우도 포함하여 평가¹⁾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절차·운영방식이 투명한지, 관리·감독 수단이 합리적인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 수단이 있는지 등 평가

2 평가절차

- ①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②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③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④ 수임·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1) 지정 규정 중에는 행정업무의 일부를 위임이나 위탁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을 지정한 후 그 지정기관이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지정은 행정청의 업무를 민간기관이 수행하게 되므로 민간위탁이나 대행과 유사하여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평가기준으로 평가 필요

3 평가요령

▶ 위탁·대행의 법적근거, 요건 등 검토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근거,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대상 및 범위가 상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지는 아니하였는지 검토

예시

법률 : “○○관리업무 중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에 위탁할 수 있다.”

대통령령 : “○○관리업무 중 교육 홍보 조사 연구 진단 치료 등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위탁·대행의 요건 및 사무를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

예시

위탁·대행 요건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단순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위탁의 대상으로 적정한지 검토

참고자료

《 민간위탁 기준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대행 관련 유의사항 》

- 업무의 대행 제도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대행이라는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또한 대행은 법률적 효과가 대행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대행의 결과를 행정기관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면 ‘대행’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법령 입안 심사 기준 中)

-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타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 위탁기관의 승인절차나 재위탁 사실 공개 등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편의 위주의 위탁·대행으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가 없는지를 검토

▶ 위탁·대행의 절차적 투명성 등 검토

- 위탁·대행 기관의 선정절차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위탁·대행기관의 선정 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특정업체의 장기간 독점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예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위탁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참고자료

《민간위탁·대행 절차 규정》

- 민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공개모집, 계약체결, 지휘감독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제10조~제16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부적인 선정 절차 등에 대해서 개별법령에 규정 필요
- 대 행 : 행정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라면 지정기준, 지정취소, 지정절차 등에 관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세부적으로 규정 필요

-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탁·대행 대상기관,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적정성 검토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수탁·대행 기관에 대한 평가규정이 있는지 검토
- 위탁·대행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위탁·대행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위탁·대행 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 등의 규정이 없는 경우

- 수탁·대행 기관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행정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예시

수탁기관이 사용료 등에 대하여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고만 규정하는 경우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검토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제재수단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제재 근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
- 위탁·대행 업무의 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지 검토²⁾

예시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대행 기관 임직원이 뇌물수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수탁·대행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2) 수탁·대행기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일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으므로 개별 법률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없음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³⁾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예외의 경우 제한경쟁방식으로 선정 가능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 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5 평가예시

예시1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8조의2(권한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습지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습지조사원의 위촉
3. 법 제8조에 따른 습지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의 보전·관리,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교환 등 협약관련 정책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훼손습지의 생태계 변화상황 관찰 및 훼손 습지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6. 습지 인벤토리 작성 및 습지조사 자료 등 국가습지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관한 사항
7. 습지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관련기관 및 단체의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습지생태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현 황

- 개정안은 습지생태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습지 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마련

* 환경부 직제 개정(2019.5.7. 시행)에 따라 습지생태원 조사·연구 기능 등을 담당하던 국립환경과학원의 국립습지센터가 폐지되고, 그 조직 및 기능이 국립생태원으로 이관

▶ 문제점

- 위탁사무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위탁기관의 무분별한 사무위탁 가능
 - 개정안(제18조의2 제8호)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사무가 위탁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탁대상 사무가 결정될 우려가 있어, 예산낭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미흡
 - 사무위탁 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적정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등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가 미흡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무분별한 위탁방지를 위해 위탁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 위탁사무 관리·감독을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등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8조(권한·사무의 위임·위탁)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제19조(보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립생태원은 제18조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사무의 처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사무를 위임·위탁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예시2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는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는 것
- ③ 정책협의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 황

-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 전용 업무 공간과 시설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 정책협의회는 전담기관 지정 심의 시 광융합기술 진흥에 관한 전문성, 진흥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문제점

- 전담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 부재
 - 전담기관 지정 요건인 전담조직, 인력 및 전용 업무 공간과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정책협의회가 지정에 관한 심의 시 재량판단의 기준 부재로 과도한 재량권을 가져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참고자료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제처)》

- 지정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지정요건, 취소요건, 비용부담, 감독규정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광융합기술의 진흥 업무 전담기관의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용 업무 공간, 시설 등의 세부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광융합기술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내용에 광융합기술 관련 산업 지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업무공간 및 시설의 세부기준,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재정누수 가능성

1 개요

-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지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등 평가
- 재정지원 대상 선정·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사후적인 관리·감독을 통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패유발요인을 평가

2 평가절차

- ①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②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③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④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3 평가요령

▶ 재정지원의 관계규정 및 법적근거, 요건, 절차 등 검토

- 부패영향평가 대상 조문에 재정지원의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일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⁴⁾등)의 관련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검토

4)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라야 함

- 재정지원 근거, 목적, 요건,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 및 다른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무분별한 재정지원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을 검토

※ 재정지원 예시

- ▶ 국가예산 보조, 출연, 출자, 국·공유 재산의 사용, 대부 등
- ▶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허가기간 연장, 양여 등 국유재산법상 특례 등

▶ 재정지원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검토

- 재정지원 결정주체, 결정방법, 제출서류, 신청자의 범위, 신청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특히 재정지원 대상 선정기준이나 그 절차 등이 공개되어 재정지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수단 검토

- 보고의무 및 실적보고서 제출 등 재정지원 사업의 효과성 확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절차 등 재정지원의 목적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재정지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제규정 검토

- 재정지원 신청 등이 위법한 경우, 지원취소 규정 등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목적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규정 등 통제장치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⁵⁾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꼭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⁶⁾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⁷⁾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⁹⁾	
□ 목적외 사용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환수 또는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등) ¹⁰⁾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공공기관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¹¹⁾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5) 수익계약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패발생소지 검토 필요

6) 가령 국유재산대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무상양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7) 예컨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지원제도라면 저소득층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8)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9)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에 관련규정이 있음

1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련규정이 있음

11)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사용허가 기간 초과, 양여 등 국유재산법 규정의 특례 및 그 제한을 정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되어 2011. 4. 1. 시행되고 있음

5 평가예시

예시1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현 황

-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이 재정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 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규정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 가. 채무부담행위
 -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 문제점

구 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적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
투자심사 제외대상	-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 법령 또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 <u>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u>

- 투자심사 제외대상의 자의적 선정 및 이로 인한 투자심사 부실 초래 우려
 -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과 달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행사 및 자의적인 제외대상 선정 소지
 - 이에,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 저하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재정낭비 초래 우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투자심사 제외대상에서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투자심사의 구분 등)

② 다음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삭제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신속하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이 필요한 경우
4.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4의2.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예시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5조(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의 분리배출·수거·재활용 및 처리 사업의 지원
2.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3. 폐기물처분부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징수에 따른 비용 교부
4. 그 밖에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현 황

- 법에서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용도를 시행령으로 위임

「자원순환기본법」 제2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1.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 운영
5. 폐지 고철 등을 수집 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이용 및 처분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평가대상조문에서는 지자체 폐기물 처리 지원, 재활용제품 유통 등 촉진, 부담금 징수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등 법률에서 위임한 부담금 사용 용도를 규정

▶ 문제점

-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명확한 부담금 용도를 추가로 규정
 - 법률에서 ‘그 밖의 자원순환 촉진 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나, 시행령에서 ‘그 밖의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재차 규정

■ 「법령 입안·심사 기준」(법제처 '12.12.31)

- 「헌법」 제75조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
- 이는 법률에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 (p.34)

- 특히, 환경부장관 재량으로 ‘자원순환 촉진사업’을 정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용도에 부담금이 낭비될 우려

* 용어(“자원순환 촉진”) 자체의 모호성으로 인해, 구체적 사업내용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 또는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예산이 무분별하게 집행될 소지가 큼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불명확한 부담금 용도 규정 삭제
 - ※ 향후 필요한 사업내용 발굴 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도를 지속 추가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6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법 제2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 분리배출 · 수거 · 재활용 지원 사업
2. 순환자원을 생산 · 유통 · 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
3.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3.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1 개요

- 정책결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내지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평가
- 의견진술 제도 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절차에 편리하게 참여·접근이 가능한지,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지 판단 (하위법규에 시행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판단)

2 평가절차

- ① 의견진술 기회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②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참여제도의 실효성 검토

- 국민 참여제도를 두고 있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며, 이해 당사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지 검토

예시

공청회, 주민 의견청취, 계획 입안 제안, 청문, 의견서 제출 등

- 또한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참여 제도의 실효성 여부도 검토

▶ 참여제도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참여제도가 없거나 당해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 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는 이유 예시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충분¹²⁾
 - ⇒ 행정절차법상의 참여만으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검토
- ▶ 정보유출 등 참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참여 최소화 필요
 - ⇒ 정보유출로 인하여 우려되는 부작용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의 파급효과 검토
- ▶ 참여보다는 신속한 결정·집행이 필요한 사안인 경우가 많음
 - ⇒ 행정 고객이자 수많은 정보 제공자인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결정·집행의 신속성을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 참여의 확대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저해
 - ⇒ 참여의 확대가 전문적인 사항의 효율적 처리를 현저히 저해하는지 검토
- ▶ 기타 행정의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필요 없는지 합리적인 이유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참여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참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12)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①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함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 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5 평가예시

예시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항만보안 위탁업체 지정 등) ① 항만시설소유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경비·검색과 제31조의 2제2항 본문에 따른 보안검색에 관한 업무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고용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경비·보안검색 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 현 황

- 개정안 제31조의3은 항만시설의 보안·검색업무 위탁업체에 대한 지정제도 도입과 관련한 규정 신설

- 제31조의3제1항은 항만시설소유자가 항만보안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관련(별표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 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 3억 이상 등의 요건 충족 필요

-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업체로 지정받은 자 등에 대한 지정 취소를 규정

■ 도입배경

- 배경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프랑스 IS테러 등으로 항만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항만보안 강화방안」 확정(2016.2.25.)
- 현황 : 항만보안 인력의 약 52%를 민간 경비업체의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 업체에 소속되어 높은 이직률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 문제 발생
- 내용 :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안검색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하여 보안강화 여건 마련(*「항공보안법」제15조제3항)

▶ 문제점

-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 미부여

- 지정취소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사업을 영위해오던 위탁업체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청문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 부재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견제출, 청문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

■ 관련판례

- 대법원 2004.7.8. 선고2002두8350판결
【유희시설조성사업협약해지및사업시행자지정거부처분취소】
 -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78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4항, 제21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구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지정취소 처분 전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 규정 마련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 등)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 요건을 다시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4.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비·검색에 실패한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경비·검색업무 수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예시2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8조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① (생략)

② 분쟁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항만운송사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항만운송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항만 운송 관련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각 항만의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1명

③ 분쟁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각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

▶ 현 황

-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이하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27조의8)
 - 개정안은 법률 위임에 따라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기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구 분	내 용
구 성	• 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 – 항만운송사업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항만운송근로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자 1명(당연직)
기 능	• 항만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해소 등에 필요한 사항 협의 – 항만별 노사간 분쟁, 항만운송사업 노무공급권 분쟁 등의 해소
운 영	• (소 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요청 • (의 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문제점

- 모호한 위원 추천기준에 따른 자의적 분쟁협의회 구성 우려
 - 개정안은 항만별 항만운송사업자 및 관련 노동조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분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
 - 노사정 협의를 통한 항만운송 관련 분쟁 해소라는 분쟁협의회 설립 취지 및 기능을 고려하면 공정한 위원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 사업자 및 노동조합의 일부만을 회원으로 하는 특정 단체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분쟁협의회 구성 우려 (특히, 단체수가 여러 개인 경우 대표성 문제 발생)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분쟁협의회 위원 구성 시,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들 간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신설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

- ① 법 제27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항만운송사업의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③ 분쟁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2. 해당 항만의 항만운송사업자에게 고용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가 구성한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다만, 해당 단체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단체 간 상호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3. 제1항의 사람 1명



(2) 공개성

1 개요

-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는지를 판단
- 민원인 등의 정보공개 신청에 따른 소극적인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관련정보를 인터넷 게시, 개별통지 등을 통해 수시로 알려주는 적극적 공개 모두 포함

2 평가절차

- ①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② 관련규정의 실효성 검토
- ③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정보제공 관련규정 검토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제공시기·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 정보제공 관련규정 실효성 검토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국민이 공개된 정보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검토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

▶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
- 현재 별도의 제도나 장치가 없지만 공개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 공개대상이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5 평가예시

예시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③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정한다.

▶ 현 황

- 법률 제37조제1항은 진흥원이 재원조달을 위해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

참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평가대상 조문은 기부자의 기부금품 관련 장부 열람 권한 보장 및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을 진흥원이 정하도록 위임

▶ 문제점

●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확보 부족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음을 고려할 때, 기부금품 운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노력 필요

■ 기부금품 운용 불투명성 관련 자료

- ▶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천안함 피격 기부금 부적정 사용 사실 확인(김재윤 국회의원, 2013.10)
 - 기부금을 2010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기부금 집행금액 총 3억 1289만원 중 25.4%를 지휘관·참모 격려금 및 회식비 73건과 함대 기념품 구입 14건에 목적 외 사용
- ▶ 기부단체 투명성 D등급, 불신 안 겼혔다(코리아타임즈, 2015.12.21)
 - 45개 대형 공익법인들 중 26개 단체 공시 양식 위반
 - 홈페이지를 기본 정보공개 성실성, 재무보고서 접근성 등 5개 지표를 공동으로 조사해 100점 만점에 15점 단위로 등급 매긴 결과 평균 D등급

- 평가대상조문 제3항은 기부금품에 대한 사용실적 등을 장부로 갖추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 및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통제 장치 필요
- 평가대상조문 제4항은 법률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정한다고 하여 진흥원이 정한 바에 대한 공개 방안 미비
- 동 시행령안 제21조는 지원금의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기부금품의 경우 달리 규정할 타당성 미흡

참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지원금의 감독 등) ② 그 밖에 지원금의 관리·감독 및 반환,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이 업무방법서로 정한다.

※ 업무방법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는 기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기부금품의 접수 및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품 모집·사용 투명성 제고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기부금품의 접수 등)

④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예시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 현 황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제정령안 제4조제3항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이를 공개해야 함을 규정
- * 시행계획 내용 :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추진 방향, 분야별 세부계획,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업 계획 및 투자계획 등

▶ 문제점

- 시행계획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방법을 미규정
 - 담당자가 시행계획 공개를 임의 처리(관련 업체 한정 공개 등) 하거나 미공개 할 경우, 외부 통제 장치가 없어 연구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등 다양한 부패 발생 우려
- * (관련사례) 천연물신약 관련 연도별 시행계획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음, 외부통제 장치가 없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짐

■ 언론보도: 2015 7. 29. 라포르시안

- ▶ 천연물신약 사업 3천억 혈세 투입하고 성과는 '제로'... 건보재정 낭비까지 초래
 - 감사원이 공개한 추진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주요 선행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요 과제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 단 한 차례도 수립되지 않았고 기초연구에서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통합 관리 지원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지적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시행계획에 대한 공개 방법 명확화
 - 공개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행계획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 제13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3) 예측 가능성

1 개요

-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판단
- 이해관계자 등이 자격기준 및 필요한 제출서류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의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하여 불투명한 결과에 대비함으로써 부패행위 예방

2 평가절차

- ①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②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 용이성 검토
- ③ 예측 가능성 판단
- ④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구체성 검토

- 평가대상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법규, 행정규칙 등 관련규정을 모두 검토
 -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업무의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민원인 입장에서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면 당해 업무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당해 법령 또는 하위법규에서 규정되어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 관련규정의 이해용이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한 하위규정이 있는 경우 그 해설 내용과 출처 파악
 - 어려운 표현을 대체할 수 있는 쉬운 용어가 있는지 검토

▶ 예측 가능성 판단

-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각각의 처리과정을 모두 고려하여 예측 가능성 판단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 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등
- 민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해당업무의 처리절차, 처리기간 및 처리여부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지 검토
 - 민원인 등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검토

▶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검토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지 판단
- 당해업무 처리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이를 어떤 형식으로 법규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

참고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검토 요령》

- 민원신청을 위하여 민원인이 준비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않음
⇒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요건(서류), 기재사항 등에 대해 검토
- 당해 업무처리를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협의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하여 쉽게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관계법령 조항과 허가 인가 협의 등의 기준 검토
- 평가 심의 등 업무처리과정에서 다수 전문가 또는 민간인이 참여하므로 처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 다수인 참여가 필요한 세부업무나 절차에 대해 검토
-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알 수 없음
⇒ 소요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검토
- 기타 업무의 성격상 그 절차가 복잡해서 법령 등에 명시하기 곤란
⇒ 절차가 복잡하고 명시하기 곤란한 이유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5 평가예시

예시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신고센터는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 4. (생략)

▶ 현 황

- 아파트 관리비 회계부정 등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전담신고창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설치근거를 「공동주택 관리법」에 마련하고 그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
-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인지한 자는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인적사항 및 신고 증거 등을 제출토록 규정
 - 신고센터는 증거 등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신고인에 보완 요구 가능

〈 신고사항 처리절차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대한 출입, 시설·장부·서류 조사 및 검사 등 감독 권한을 가짐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문제점

- 방문·우편 등 신고서류 제출 방식과 신고서 등 서식 미비로, 신고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한 신고인의 예측 가능성 저해
 - 신고 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신속한 접수 저해 및 신고 처리 지연 우려
- 신고자료의 보완 기간을 ‘적정한 기간’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보완 기간을 운영할 가능성
 - 신고인의 ‘보완요구 불응’은 신고를 직권 종결할 수 있는 사유(제96조의4제2호)이므로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신고인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한 등 절차를 최대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신고방법과 필요 서류 등을 구체화하여 명시
- 신고자료의 보완 기간을 특정하고, 필요시 신고인과 협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보완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대한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4. 신고의 경위 및 이유
5. 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장소 및 그 내용
6.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2.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
3.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 등에서 신고센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외의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고센터 및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시2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제18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刻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현 황

☞ 개정이유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령은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규정을 신설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지적

-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또는 청구 기각·각하 결정
 - 소방청장등은 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안 제18조의3)

▶ 문제점

- 손실보상 여부 및 보상금 결정 기한 불명확에 따른 예측 가능성 저해
 - 손실보상 청구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또는 청구 기각·각하 결정 시까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장기간 방치 우려

- 보상금 지급 기한 미설정에 따른 청구권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
 - 보상금 지급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금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대강의 기간에 대해서도 예측 불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 처리 기한 설정
-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금 지급 기한 설정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② 소방청장등은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1 개요

-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 지 등 부패유발요인 평가

2 평가절차

- ①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②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③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
- ④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3 평가요령

▶ 평가요령 개략

- 이해충돌방지 규정의 필요성 여부는 획일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성질¹³⁾, 위원회 업무성격¹⁴⁾, 규정 실익 등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13) 의결기관과 단순 자문기관의 위원은 구별하여 평가기준을 신중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14)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는 심의를 하거나, 분쟁 조정·중재 등의 업무 등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 위원은 단순 자문 위원 보다 강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이해충돌 가능성 검토

- 위원 및 임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해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예시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유무 검토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제척·기피·회피, 해촉, 공무원 의제, 겸직·영리행위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 장치의 적정성 검토¹⁵⁾

- 자격요건 및 임기·연임 규정
 -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임기 규정¹⁶⁾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1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안·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경우나 심의사항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위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심의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제척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
- 기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¹⁷⁾
- 회피제도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겸직·영리행위 금지 규정
 - 위촉된 위원 등이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지를 검토

▶ 이해충돌 방지제도 규범력 강화수단 검토

- 해촉제도 규정¹⁸⁾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
- 공무원 의제 규정¹⁹⁾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

17) 위원회 운영을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어 당사자가 사전에 위원을 알 수 없는 경우 기피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도시개발위원회의 경우처럼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등의 계획수립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로서 기피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개발구역예정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족포함)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토록 규정함으로써 보완

1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19)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안·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률에 명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2016.8.12 시행)

참고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표준(안)

제OO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OO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OO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장관(각 부 처 청 등 기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조제1항(앞의 제척사유 인용하는 조항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척사유가 있으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위원회 업무 및 성격에 맞게 제척 사유 및 해촉 사유 변경 가능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이나 영리행위 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5 평가예시

예시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현 황

- 평가대상 법령은 자격검정의 기본방침 및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을 심의하는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

▶ 문제점

- 자격검정위원회는 자격검정과 관련한 주요 방침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및 시험의 합격자 결정까지 심의하는 기구로서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됨
- 평가대상 법령은 자격검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침해될 수 있고 이를 통한 부패행위 발생이 우려됨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 신설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 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 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 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예시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① 공단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제운용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
 3.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제운용요강으로 정한다.

▶ 현 황

-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화재공제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이하 “공제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신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공제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공제운용요강 등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 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수지결산
- 그 밖에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공제운용계획 포함 사항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수입계획
-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자금의 사용계획
- 그밖에 공제운용요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제점

- 공제운영위원회 심의위원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소지
 - 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제운용계획의 수립·변경 관련 하여 공제운용계획에는 공제사업 자금의 수입 및 사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 필요
 - 개정안의 경우, 이해충돌방지 장치가 없어 특정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가 있음
 - ※ 공제사업의 주요 자금원은 화재공제 가입자가 내는 부금과 공제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정부 및 지자체의 출연금 등이므로 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절실함
-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위원구성 등의 업무를 자의적으로 수행할 우려

☞ 관련사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불법, 비리, 특혜, 낙하산 인사 판쳐(‘14.4.29.머니투데이)
- 공제회는 무풍지대, 공통의 이해관계로 뭉쳐 회비로 운영되는 국내 공제회는 여전히 낙하산 인사 만연(‘16.4.27.연합인포맥스)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마련
 - 장기위축 배제를 통한 위원회의 객관적인 운영 제고
- 공제운영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 특정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시 해당위원 심의 배제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8(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④ 공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소기업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전통시장 및 공제조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하
가. 보험·금융·법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전통시장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의9(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1 개요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평가

※ 기관별 부패영향평가 자율평가 시 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타율적 청렴성 제고가 아닌 자율적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신설한 평가기준임

2 평가절차

- ① 관련 부패사례 검토
- ②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③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3 평가요령

▶ 관련 부패사례 검토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타기관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과거 부패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예시

권익위 부패신고 처리 사건, 내부감사 및 감사원 적발사항,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 사항, 언론 보도사항 등

▶ 부패방지장치 관련 규정 및 실효성 검토

-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부패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 관련규정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예시

부패방지 장치	세부사례
민간 참여 확대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를 내부감사에 참여
	독립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²⁰⁾ 및 감독기관의 회계감리
	계약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하여 업무처리 과정 모니터링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 필수 참여
내부 행동강령 강화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요구 제한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거래 제한, 골프 금지
	공무원 가족의 산하기관 채용 제한
	임용 전 재직 업체 관련 직무 수행 금지
	재직자와 직무관련 퇴직자 간 사적 접촉 제한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강화
부패신고 활성화	부패신고 대상 확대(알선·청탁, 업무정보 유출, 전관예우 등)
	신고보상금·정기감사 면제 등 인센티브 장치 운영
IT기술을 활용한 전자관리시스템 도입	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통한 자재 이력관리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통한 계약과정의 모든 서류 전자화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 도입을 통한 무작위 선정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부패방지장치의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경우나 부패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부패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부통제장치 도입 필요성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

예시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필요없는 이유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특별한 부패통제장치가 불필요
- ㉡ 특혜발생, 일부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이런 문제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아님
⇒ 부패문제와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 법령이나 제도의 불완전성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담당자의 윤리의식과 행태에 따라 부패여부가 결정되므로 부패통제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는 불필요
⇒ 법적 제도적 부패통제장치보다 윤리적 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논거와 입증자료 제시
- ㉣ 평가대상 법령에는 특혜발생, 불명확한 규정, 낮은 예측 가능성 등과 같은 부패유발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구체화시킬 계획
⇒ 계획 중인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주요내용 별도 붙임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5 평가예시

예시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현 황

- 개정안은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규정
 - 해촉 할 수 있는 사유는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직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

▶ 문제점

-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규정 미비
 - 보험 급여결정에 대한 사항은 심사의 공정성이 요구되나, 심사위원회 위원의 부정·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규정이 없어 심사의 공정성·책임성 확보 곤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위촉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보험업무에 종사하는 중앙회·회원조합·수협은행의 임직원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예시2 | 항만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해당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 등 가액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시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 황

🔗 개정 이유

- 현행 항만법 상 감정평가 방법은 다른 유사법령*과 달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주체 및 절차 등이 부재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의뢰자에게 유리한 평가액을 제시할 우려 상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 ② 매립면허취득자가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은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가격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산정하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이 적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다시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유사법령 간 감정평가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평가업자 선정 주체 명확화 및 재감정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비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의 항만공사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는 준공과 동시에 국가 귀속이 원칙이나,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귀속의 예외(비관리청 귀속)를 인정(법 제15조제1항)
 - 이에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는 비관리청에 귀속되는 토지의 요건으로 [별표 3]에 규정된 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1호), 취득하려는 토지 가액이 총사업비 범위 이내(2호)일 것으로 규정

시행령 제18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로 한다.

1. 별표 3*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비관리청이 취득하려는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 「별표3」은 부두별 국가 귀속 토지의 범위를 정함(적재 톤수 2만톤급 미만의 일반 소형부두의 경우 안벽으로부터 200미터 등)

** 총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비용을 합산한 금액(단,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및 토지 관련 비용 제외)

- 시행령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토지가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개정안 제18조제3항)

※ 현행은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 미규정, 비관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에 유리하게 평가액이 산정될 우려가 있어 개정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토록 명확히 규정

▶ 문제점

- 감정평가 시 사업시행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행정청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을 하는 등 부패행위 발생 우려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로만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배제되어,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 로비 등 부패 발생 우려 및 평가의 신뢰성 저해
 -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추천이나 이해당사자의 추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법령에 비해 행정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미흡

■ 토지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식 사례

① 신청자 중 '추첨'으로 지정하는 방식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① 매립면허 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 및 이해관계자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②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관련 보도 사례

- 법원, '헐값감정' 해주고 돈 챙긴 감정평가사들 징역형 <연합뉴스, '16.9.29.>
 - 서울 용산구의 고급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분양 전환가격을 낮게 감정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감정평가사들이 1심에서 징역형
 - 김씨 등 3명은 2013년 9~11월 분양전환 대책위원장 윤모씨로부터 분양전환 가격을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실제로는 감정을 하지 않은 채 아파트 전세보증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평당 가액을 사업 제안서에 써내고 감정평가 업무 수주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고
 - 시행령에 세부 선정 절차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마련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항만법 시행령	항만법 시행규칙
제24조(국가 등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 및 항만시설) ①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로 한다. 1. 별표 4에 따른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해당 토지의 가액(價額)이 제25조에 따른 총사업비의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총사업비는 해당 토지의 조성 공사에 사용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가액은 비관리청이 시행한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24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에서 추천하여 지정해야 한다. 1. 평가대상 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토지 조성공사의 준공 또는 준공예정 연월일 3.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일시 및 장소 4. 지정하려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수 5.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6. 감정평가법인등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및 감정평가사 등록증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 설립인 가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했을 때에는 그 공고 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지정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비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1 개요

- 급변하는 행정환경으로 인해 적극행정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어 법령 등에 내재하는 소극행정 유발 요인을 이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법령상 근거 부재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지 평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적극행정 운용규정」 제2조제2호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

2 평가절차

- ① 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②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③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

3 평가요령

▶ 법령상 근거 부재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평가대상 법령의 상·하위 법령을 검토하여 상위 법령의 위임이 있음에도 하위 법령에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근거 부재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

-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업무해태, 자신 또는 소속기관만을 위한 자의적인 업무처리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지 검토

예시

법령상 각종 인·허가 요건, 자격 요건, 지원 대상 등

▶ 소극행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

- 처리기한 규정, 민간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등 공무원의 업무해태 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의 반복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억제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4 체크리스트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법령상의 근거 부재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불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상 각종 요건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5 평가예시

예시1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위반	2회위반	3회 이상 위반
토,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18호	300	600	900

▶ 현 황

- 철도안전법 개정('20.12.22. 공포, '20.6.23.시행)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47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제8호의2 신설)
- 철도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시행령 제64조 및 [별표 6]에 따라 위반행위별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음

▶ 문제점

-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이 개정령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게 되면 기업, 국민 등 법 적용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저해됨
 - 근거 법령 부재로 인한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 법률 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개정령안은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철도운영자의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64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노.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제2항제8호의2	150	300	450

예시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1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15조의4 관련)

6.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 비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현 황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이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하고, 여객시설에 무역항 외에 연안항이 추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 중 관련 내용

- 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제도로 변경
-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문제점

- 법률 개정에 따라 「항만법」 제2조제3호의 연안항이 ‘여객시설’에 포함되어 개정안 제11조 및 이에 따른 [별표 1]은 “(고정건축물이 있는)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중 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을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추가

※ 여객이용시설 : 대합실, 여객승강용시설 등

※ 항만친수시설 : 해양레저용 시설, 해양문화교육시설, 해양공원 시설 등

- 하지만, 법제17조제4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15조의4 및 [별표 1의2]의 제6호는 「항만법」제2조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시설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연안항에 설치된 항만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 이는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연안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연 500만 여명)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무역항과 연안항 이용 여객 현황

(단위 : 명)

구분	항명	2019년 이용객 수			평균 이용객 수 (최근 5년 기준)		
		내항여객선	외항여객선	계	내항여객선	외항여객선	계
무역항	인천항 등 13개 무역항	7,096,277	2,969,431	10,065,708	7,513,561	2,813,428	10,063,689
연안항	녹동신항 등 21개 연안항 ²¹⁾	4,680,611	—	4,680,611	4,993,137	—	4,993,137
계		11,776,888	2,969,431	14,746,319	12,506,698	2,813,428	15,056,826

※ 이용객 통계는 해운조합 전산매표시스템상 입항+출항의 합이며, 전산매표 시스템상의 실제 매표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 검토결과 : 개선권고

-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 보완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에 연안항 추가

21) 내항여객선 이용객은 29개 연안항 중 21개 연안항(녹동신항, 성산포항, 화흥포항, 중화항, 땅골항, 울릉항, 홍도항, 진도항, 대천항, 용기포항, 흑산도항, 거문도항, 연평항, 상왕등도항, 국도항, 후포항, 화순항, 송공항, 나로도항, 부산남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결과

- 권고 취지를 반영하여 법령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 시설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201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214

[붙임 1]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준 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각종 부담 · 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 · 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 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 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 (법률상 · 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 · 대상 · 절차 · 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 · 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 · 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 · 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 · 예규 · 고시 ·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 · 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 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 ·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최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 제도와 비교할 때 적절한가?	
□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 목적외 사용 등 위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환수 또는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등)	
□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0배 추가 환수 등)?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개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 민원신청 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분명한가?	
□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부패통제

(1) 이해충돌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 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법령상의 근거 부재로 인해 공무원의 부작위 등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법령상 각종 요건 등으로 인해 소극행정이 유발될 위험성이 있는가?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처리하는 등의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자신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 또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가?	

[붙임 2]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²²⁾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이의제기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22)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공개	-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기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2) 부과·징수 업무²³⁾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23)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 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이의 제기	□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 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 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기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3) 보조·지원 업무²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 선정	□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 적정성	□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 제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 공개	□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공개성)	
관리 · · · 감독	□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수혜자격 배제	
기타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²⁵⁾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25) 보조·출자·출연·융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제기	□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공개	□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 감독	□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5) 행정조사 업무²⁶⁾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²⁷⁾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 · 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 ·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 조사 기간 · 방법 · 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 위법 · 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 · 내용 · 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26)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를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업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단순 실태조사 등 명령이나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행정조사 외에도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명령·강제를 수단으로 하는 권력적 행정 조사도 있음

27) 「행정조사기본법」에서 행정조사의 대상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무조사나 금융감독기관의 검사·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음(제3조제2항)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²⁸⁾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 기능 등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28)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및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음

(6) 단속·점검 업무²⁹⁾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 공개	-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29)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부담적 행정행위를 발하는 경우나 사실상 강제력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정지도의 경우는 본 체크리스트 활용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재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 기능 등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참고 : 단속·점검분야 예시]

풍속영업분야	식품·위생분야	환경분야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비디오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무도장 및 무도학원 등	식품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즉석 판매식품가공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등	대기·악취배출업소, 폐수배출·처리업소, 오수·분뇨처리업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소음·진동배출업소, 유독물영업소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 위원 구성 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제척 · 기피 · 회피	□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 · 기피 · 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제재	□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 위원회 심의 · 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 회의록 작성 · 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 ·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가능성)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의 용이성)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정보 공개	▣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공개성)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처리지연 등 소극행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참고
자료

관련 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법 률	시 행 령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법 률	시 행 령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 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 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률	시 행 령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 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2.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 3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4호
개정 2011.10. 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5호
개정 2012.10.2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3호
개정 2013. 6.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8호
개정 2015. 1. 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2호
개정 2015. 3.3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5호
개정 2015.11.1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0호
개정 2019.10.8.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81호
개정 2020. 5.1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11호
개정 2020. 9. 1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1호
개정 2020. 11. 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1. 원안동의 :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
2.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
3.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법령안”이라 한다)
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훈령·예규·고시·공고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포함한다)와 조례·규칙 및 법 제2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개정 자치법규안”이라 한다)
4.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평가를 요청한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정관 등(제정이나 개정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부규정(이하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2(평가대상 제외법령 등) ①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고자 하는 법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이하 “제외법령”이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위원회는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헌법기관이 행하는 사항에 대한 법령
2. 국가보안, 예비군·민방위, 국토·통일, 국호·국기·연호, 전례·국경일 등 국가의 안보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령
3. 직제,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령
4. 폐지법령,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령
5.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령

- ② 위원회는 제외법령의 시의성 제고 및 정책 환경 변화 등 제외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외법령을 지정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제외법령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④ 위원회는 제외법령에 대한 평가의뢰를 받은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을 평가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4조(평가기준) 평가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에 따른 기준(이하 “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유의하여 판단한다.

제2장 부패영향평가 처리 절차

제1절 제 · 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5조(법령안 및 기초자료의 접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 개정 법령안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정 또는 전부 개정 법령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이하 “세부자료”라 한다)까지 첨부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처전담제 실시) ① 평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담당자별로 각 소관기관을 전담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 의뢰 문서를 접수한 문서수신 담당자는 업무 분장에 따라 지정된 평가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서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 세부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관기관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이 제출한 제 · 개정 법령안 및 기초자료 · 세부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 ·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분석 시 평가 대상 법령의 상위 근거 법령, 평가 대상 법령을 근거로 하는 행정규칙·조례 등 하위 법령 및 관련·유사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제8조(평가 기한)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의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친 후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소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문 의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①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소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재평가가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선권고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평가담당자는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중요 사항”이라 한다)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1.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기관과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3. 다수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

제10조(평가결과 보고 및 통보) ①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개선권고나 철회 의견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는다. 다만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사항에 대한 결재 : 부패방지국장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재 : 담당과장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려는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이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는다.

- ③ 평가담당자는 제·개정 법령안 전체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담당 과장의 결재를 거친다.
- ④ 평가담당자는 평가결과에 대한 결재를 완료하는 즉시 소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 ⑤ 평가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다만, 원안동의인 경우를 제외한다)한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로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⑥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⑦ 평가결과가 개선권고나 철회의견인 경우로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평가 절차) ① 소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

- 1. 소관기관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
 - 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
 - 3. 소관기관과의 협의·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재평가 요청된 제·개정법령안은 당해 법령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되,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과별 합동토론 등의 절차를 거친다.
- ③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 ④ 재평가 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한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 의결절차를 거친다.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 ① 부패영향분석과장은 반기별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대한 소관 기관의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결과 조치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소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관회의 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여건의 변화 등으로 사후관리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대상이 중요사항인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3조(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위원회는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소관 기관(이하 “소관 기관”이라 한다)에 현행 법령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패영향분석과장은 소관 기관이 작성·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접수하여 관리한다.

④ 위원회는 각 기관이 제출한 평가대상과제를 토대로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을 각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소관기관으로부터 평가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법령등에 대한 기초자료·세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제13조의2(현안과제 부패영향평가) 위원회는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계획과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3. 국가시책으로 중점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
4.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에서 당해 또는 관련 현행 법령등에 부패유

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 등) 현행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를 위한 자료의 보완·평가서 작성 및 자문 의뢰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료 제출요구·실태조사 등) ① 평가담당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에 업무편람,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감사·수사결과 및 민원처리현황 등 평가에 관련된 자료·서류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예비조사를 한 후 관련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소관기관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 평가담당자는 법령운용의 실태에 대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 초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단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7조(개선권고안 보고 및 위원회 의결) ① 평가담당자는 개선권고안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소관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다.

② 평가담당자는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마치면 그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권고안을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다만 제12조의2제4호에 해당하여 제·개정 법령안과 함께 현행법령 등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8조(개선권고안 권고 및 재평가 등) ① 평가담당자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개선권고안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재평가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사후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절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19조(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평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절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제20조(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받은 경우 소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개정되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행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 제9조 및 제14조부터 제17조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부패영향평가 자문

제21조(자문기구의 구성) ① 위원회는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 제31조 제1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 기관·단체 등이 추천하거나 위원회에서 공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부패방지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기술사·세무사 또는 관세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자문 의뢰) ① 평가담당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자문기구에 속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외부전문가 풀(POOL)에 등록된 외부전문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 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자문 방식) ① 평가담당자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영향 평가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평가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중요사항에 관해서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평가담당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자문 수당) 평가내용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통보한 전문가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예규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문서·자료 및 역량 관리

제26조(문서 관리)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 관련 문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접수년도 및 일련 번호 등을 구분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② 평가담당자는 평가 의뢰 문서가 접수된 때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되는 일련의 평가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7조(부패실태자료 수집·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공직자 종합자료통계 및 위원회 신고심사 실적 등 부패실태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28조(부패영향평가 관련 정보 관리) 부패영향분석과장은 평가에 관련된 접수내용, 자문현황, 평가결과 등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28조의2(부패영향평가 역량 관리) ① 위원회는 평가담당자의 평가기법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역량을 제고하고, 각급 기관의 자율적인 부패유발요인 발굴과 제거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6호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행한 부패영향평가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이하 부칙 생략)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평가분야	평가분야	주요 검토 내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별지 제1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법령(등) 명	(제도명 :)							
구 분	제정			개정			현행	
형 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정관 등)
관련 행정규칙 명 (고시, 훈령, 예규, 규정, 지침 등)			상위 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행정규칙명을 기재(제·개정조항에 한정하지 말 것)					
소관기관	기관명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협약기간	. . .부터 . . .까지(일간)					
	※입법예고	. . .부터 . . .까지(일간)						
첨부자료	필수자료		1. 법령 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2. 법령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기타자료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가급적 5급 이상 기재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준수

문1.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수준입니까?

① 과도함 ② 과도하지 않음

▶ 작성사항

〈표1-1〉 준수부담 관련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준수사항	주요 준수자 (연락처)

〈추가설명〉 준수부담의 필요성·타당성

〈참고자료〉

1	
2	

문2.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입니까?

① 적당 ② 약함 ③ 강함

▶ 작성사항

〈표1-2〉 제재규정의 현황

번호	근거규정	위반행위	제재현황

〈추가설명〉

번호	제재의 필요성 및 제재수준의 적정성

〈참고자료〉

1	
2	

문3.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① 없음 ② 있음

▶ 작성사항

〈표1-3〉 수익적 규정의 주요내용

번호	근거규정	수혜대상	주요내용

〈추가설명〉 특혜부여의 이유와 적정성

〈참고자료〉

1	
2	

집행

〈표2-1〉 재량관련 사항의 확인

번호	근거규정(조·항)	재량의 내용

문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구체적·객관적(통제장치 포함) ② 추상적·주관적

▶ 작성사항

〈표2-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번호	재량의 명칭 (근거규정)	재량권자	재량행사의 절차·요건	재량의 범위·정도	재량권 통제장치

〈추가설명〉 재량규정이 추상적·주관적인 사유

〈참고자료〉

1	
2	

① 명확 ② 불명확

① 있음 ② 없음

문6-1.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문6-2.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2-4〉 재정지원 규정

번호	근거규정	지원 종류	지원 대상	지원 기준 · 절차	유사 지원 제도	관리 · 감독 장치 (제재규정 포함)

〈추가설명〉 유사지원제도와와의 차별성 또는 재정지원규정이 불명확한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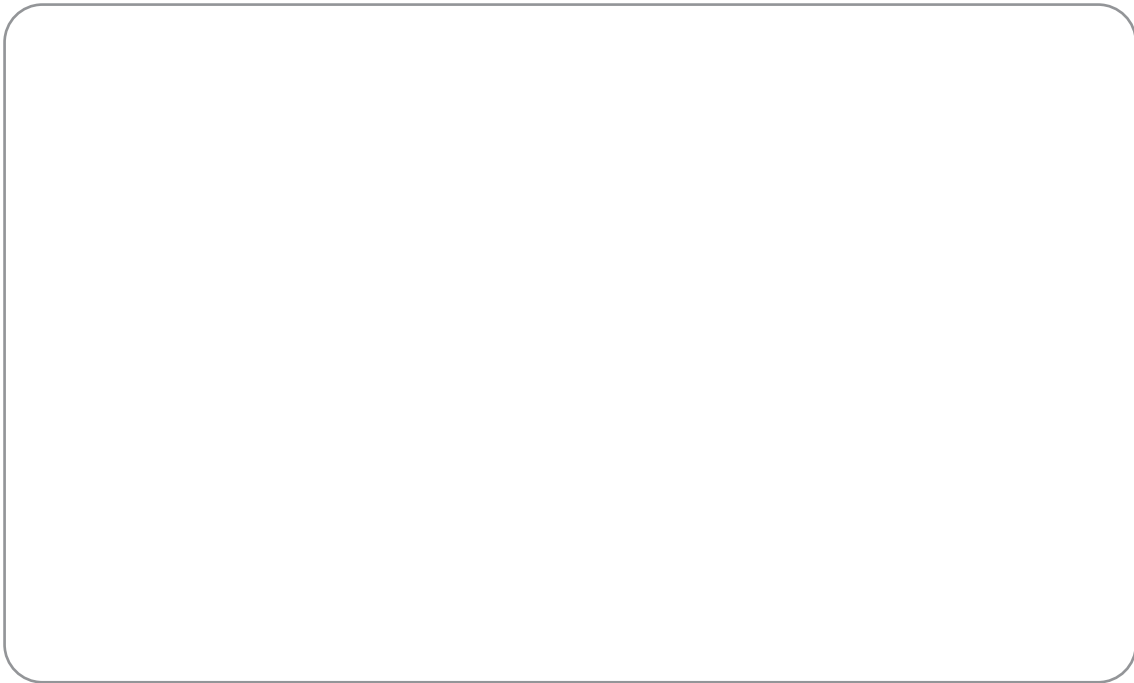
〈추가설명〉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유

〈참고자료〉

1	
2	

▶ 작성사항

〈표3-1〉 업무흐름도(workflow)



문7.【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 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습니까?

- ① 있음(이해관계자 대표성 확보) ② 없음

▶ 작성사항

〈표3-2〉 의견수렴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여부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참여기회보장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8.【공개성】 정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3-3〉 정보공개 제도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9.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까?

- ① 예측가능 ② 예측곤란

▶ 작성사항

〈표3-4〉 행정절차의 예측 가능성

구 분	근거조항	내 용
준비사항		
처리절차		
처리결과		
소요기간		

〈추가설명〉 예측 가능성이 낮은 이유

〈참고자료〉

1	
2	

부패통제

문10.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4-1〉 이해충돌 가능성

번호	근거규정	내 용

〈추가설명〉 별도의 이해충돌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1.【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① 필요성 있음 ② 필요성 없음

▶ 작성사항

〈표4-2〉 관련 부패사례 및 부패통제장치

번호	부패사례	관련규정	부패통제장치 마련여부

〈추가설명〉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는 이유

〈참고자료〉

1	
2	

문12.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작성사항

〈표4-3〉 소극행정 유발 규정

번호	관련 법령	근거 부재 여부	부작위 유발 여부	직무태만 유발 여부

〈추가설명〉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 또는 재정 손실 발생 가능 사유

〈참고자료〉

1	
2	

[별지 제3호 서식]

세부 평가서

법령명 :

평가대상 조문

평가기준 :

현 황 :

문 제 점 :

검토결과 :

[별지 제4호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 대상 법령	
법령명	
소관부처 (기관)	
2. 평가 의견	
※ 평가 기준 • 준수 분야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해발생 가능성) • 집행 분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 행정절차 분야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 가능성) • 부패통제 분야 (이해충돌 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3. 개선요구 사항	
4. 참고 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통보합니다. .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자문번호	부패영향평가 자문요청서									
수 신 : 소속 ○ ○ ○ 성명 ○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제2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 ○ (전화/팩스 :) (이메일주소 :)										
평가대상	법령명									
	구분	제정			개정			현행		
	형식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	조례	규칙	내부규정 (사규·정관 등)	
	관리번호									
자문사유										
자문사항	-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등 -									
첨부자료	1. 해당기관의 평가 기초자료 2. 평가담당의 평가항목별 예비 검토서 3. 관련법령 4.									
비고	자문의견은 . .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부패영향평가 지침

Corruption Risk Assessment Manual 2022

- 발 행 일 : 2021년 12월
- 발 행 처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 전화번호 : 044-200-7663
- 팩 스 : 044-200-7941
- 홈페이지 : www.acrc.go.kr
- 발간번호 : 11-1140100-000004-14